

조선말기 살인사건 조사의 과학성 검토,

1895-1907 *

- 규장각 소장 檢案에 수록된 凶器 그림의 기초 분석 -

조영준 **

-
- | | |
|-------------------|------------------------|
| 1. 머리말 | 4. 실측의 정밀성과 객관성에 대한 검토 |
| 2. 연구목표와 분석대상 | 5. 검안에 흉기를 그려놓은 이유 |
| 3. 검안에 그려진 흉기의 실체 | 6. 맷음말 |
-

초록: 檢案은 조선후기에 살인 사건을 조사하고 보고한 대표적 기록이다. 검안에는 다양한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지금까지 연구자의 관심을 끌어온 것은 주로 屍帳에 그려진 시체의 개형, 즉 仰面과 合面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연구 방법론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도를 위해, 살인 사건에 사용된 凶器가 검안의 말미에 그려져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검안에 그려져 있는 흉기의 이미지와 측정 기록을 취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조사 과정에서의 실측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檢屍의 과학성·객관성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검안의 작성 및 보고 절차로서 ‘圖畫上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고찰하는 과정에서 당대의 수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행정의 형식주의를 포착하였다. 생활사 연구의 자료로서 검안의 사료적 가치를 재발견한 것도 이 논문의 성과 중 하나이다.

핵심어 : 검안, 흉기, 살인사건, 과학수사, 현장조사, 척도, 생활사

* 이 논문은 2015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심층연구사업 공동과제로 수행된 연구이며 (AKSR2015-C01), 같은 해 11월 6일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개최된 결과발표회 “조선후기의 법, 범죄, 정의—법문화의 특징과 사회상의 재인식—”에 제출된 초고를 수정·개선한 것이다. 연구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심재우 교수, 토론을 맡아 유용한 조언을 해 주신 서호철 교수께 감사한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과학부 조교수.

1. 머리말

살인은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 중에서 가장 흉악한 행위 중의 하나이며, 그래서 살인자는 대개 극형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 역시 가장 무거운 것이 동서고금에 공통적이다. 하지만 누가 누구를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 살해하였는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피살자 및 용의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평한 처분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당한 처벌로 인한 피해가 용의자에게 내려지는 제1종 오류(Type I error)나 살인을 행하고도 범인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제2종 오류(Type II error)를 모두 줄이면서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역시 객관적인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장 검증을 통해 피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범행 장소와 도구를 감식하고, 목격자나 관계자를 조사하고, 용의자를 취조하는 등의 수사를 과학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조선후기의 살인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리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을 통해 많은 정보가 전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개별 사안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도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주는 자료는 역시 檢案이다. 검안에 기록된 내용은 살인 범죄의 사실을 조사하고 사건의 정황과 증거를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 검증 및 조사의 내역은 初檢 및 覆檢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러한 檢驗의 실시가 인근 고을의 서로 다른 수령 여럿에게 盲檢(blind) 방식으로 맡겨졌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검험은 중국에서 전래한 『無冤錄』이라는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양식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으며, 정약용의 『欽欽新書』에서 볼 수 있듯이 수령의 신중한 접근 또한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검안의 주요 내용은 관계자에 대한 조사 및 시체에 대한 검시 결과의 서술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했던 양식으로서 尸帳이 있다. 시장은 인체의 개형을 앞뒷면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그림이며, 그렇게 표현된 각 부위에 시체의 손상 상태를 점검한 결과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었다. 검안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시장은 가장 눈에 띄는 그림이기 때문에 대개 ‘검안의 그림’이라고 하면 이 시장을 떠올리게 된다. 『增修無冤錄』을 비롯한 검험의 매뉴얼에도 仰面과 合面이 예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준화된 양식을 통해 시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음이 여러 논저에서 강조된 바와 같다.

이 논문은 그러한 객관성에 대한 의문에서 구상되었다. 검안의 기록은 과연 철저히 객관적일까? 살인사건의 조사는 담당 수령에 의해 면밀하게 이루어졌을까? 검안의 기록은 과연 살인 사건의 해결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까? 검안에 기록된 각종 정보는 과연 정확한 것일까? 이러한 의문은 『山清郡生林里鴨谷洞致死女人金召史檢屍初檢五檢文案』(奎 26569)의 분석에서 출발하였다. 산청군에서 사망한 김조이에 대한 檢屍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각각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시체의 身長이 모두 제각각이다.¹⁾ 5척 1촌 3분, 4척 9촌 5분, 4척 6촌 2분, 4척 4촌 8분, 4척 3촌 등의 다섯 가지 측정값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김조이의 키에 해당하는 것일까? 다섯 명의 檢屍官 중에서 어떤 사람의 기록을 신뢰해야 하는 것일까?

검안에 담긴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신장뿐만 아니라 頭髮의 길이나 年齡 등의 측정 또는 추정에서 나타나는 오차를 확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회가 닿는다면 사건 처리의 기초 자료로서의 검안의 실효성에 대해서 수치를 통해 계량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검안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량화 작업에 앞서, 기존 연구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圖畫, 즉 그림에 주목하여 그러한 객관성의 검증을 1차적으로 수행해 보고자 한다.

검안에는 시장 외에도 살인 범행의 현장이나 도구를 실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²⁾ 예를 들어, 목을 매달아 자살한 경우에는 목에 감았던 끈의

1) 조영준, 2012 「조선시대 문헌의 身長 정보와 尺度 문제: 軍籍과 檢案을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41, 138면.

2) <부록 2>에서 확인되듯이, 검안에서는 흉기 그림을 圖, 圖畫, 圖形, 圖畫記, 圖形, 見様, 圖樣, 模樣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소재와 길이가 묘사되어 있고, 물에 빠져 죽은 경우에는 빠진 곳의 둘레 및 水深을 적어 놓았다.³⁾ 또한 범행에 사용된 흉기로서 칼, 총, 돌, 방망이, 작대기 등이 개략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 길이와 두께 등의 치수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사진 技術이 발달한 현재와 달리 그림으로 표현하였기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현장의 모습을 전하는지가 사건의 전모를 밝힘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관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편의상 흉기 그림에 한정하여 분석함으로써 검안에 나타난 살인 사건의 면모를 다시 살피고, 과학수사의 실태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각종 살인 도구의 개형과 실체를 통해 당대 생활사의 복원이라는 부수적인 소득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표와 분석대상

검안에 그려진 흉기의 그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간헐적으로 소개된 바 있다.⁴⁾ 하지만 대개 흉기가 그려졌다는 사실에 대해 짤막하게 언급한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그러한 흉기 그림을 지면에 첨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⁵⁾ 최근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온라인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문화원형백과’에서도 검안에 그려진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검안이라는 자료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이 높아져 있는 데 비하여, 이미지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 논문을 통해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3) 측정의 결과는 長, 廣, 圓圓, 圓經, 圓圓經, 經, 厚, 高, 重, 深, 距, 形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4) 유승희, 2011 『미궁에 빠진 조선: 누가 진짜 살인자인가』, 글항아리, 132면; 심재우, 2011 『네 죄를 고하여라: 범률과 형벌로 읽는 조선』, 산처럼, 202면.

5) 심재우, 위의 책, 202면에 밤나무 육모방망이의 이미지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 논문〈부록 2〉의 (23)에 정리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김호, 2006 『원통함을 없게 하라: 조선의 법의학과 《무원록》의 세계』, 프로네시스, 35면에서는 자살 사건의 사례로서 검안에 수록된 ‘현장의 스케치’에 해당하는 春舍, 帽木, 縊索의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630여 종의 검안(또는 관계 자료)이 소장되어 있으며, 冊數로는 2천여에 달한다. 이 논문의 작성을 위해 일일이 확인해 보니, 그 중에서 그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약 200건으로 파악되었다. 그 중에서 100여건에는 소위 시장, 즉 시체의 양면과 합면만이 그려져 있다. 나머지 약 100건에는 양면과 합면이 그려진 경우도 있지만, 범행의 현장이나 살인의 도구가 그려져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그림 중에서 특히 흉기 그림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당대의 검안 작성에서 나타난 특성을 확인하고, 기록의 정밀성이나 객관성에 대해 탐구하며, 생활상 또는 사회상을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⁶⁾

요컨대, 이 논문에서는 현존하는 검안에 그려진 흉기 그림을 모두 모아서 비교하고 분석한다.⁷⁾ 청구기호를 기준으로, 76건의 검안(또는 시장)에 흉기 그림이 포함되어 있다(〈부록 1〉 및 〈부록 2〉 참조). 청구기호가 다르지만 초검·복검으로 구분된, 동일 사건의 중복분을 제외하면 사건의 숫자는 그보다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특정 자료 안에는 둘 이상의 사건 정보가 포괄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가지 흉기가 사용된 경우도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
- 6) 이 논문의 목적은 살인의 원인에 대한 계량화가 아니다. 살인의 원인에 대한 계량화가 목적이라면 현존하는 검안 전체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존하는 검안 역시 당대의 전체 살인사건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므로, 모집단의 일부로서의 표본에 불과하다. 현존하는 검안의 현존 이유가 특정화되지 않은 채 불명인 것과 마찬가지로, 현존하는 검안 중에서 특정의 검안에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어떤 검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에 대한 경향성을 관찰해 두는데 만족하고자 한다.
 - 7) 흉기 이외에도 다양한 그림이 검안에 그려져 있다. 이 논문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정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범행 현장의 목을 매단 대들보를 들 수 있다. 주로 자살에 해당하는 것인데, 목을 매달 때 사용한 끈을 여러 가지로 묘사해 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주로 窒死한다거나 또는 飲毒한다거나 하는 형태의 자살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한 분석에 대해서는 별도의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단, 칼로 자해를 하는(奎 21874) 등 액사나 음독 이외의 자살 건은 이 논문의 분석에 포함하였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흉기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규장각에서 제공하는 해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忠淸南道洪州郡縣內面下切致死男人朴永寬文案』(奎 21512)의 해제를 보면 “흉기로 사용된 가목의 그림을 부록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서울대학교 奎章閣, 1998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續集: 史部 5』, 民昌文化社, 385면), 여기서의 가목은 흉기가 아니라 얹어 맞고 나서 목을 매단 나무의 그림에 해당한다.

분석 대상의 수효는 달라질 수 있다. 초검이나 복검 등의 구분 없이 흉기 그림의 숫자를 모두 하나하나 세어 보면 120건으로 집계된다(〈부록 2〉 참조).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이들 흉기를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합계가 94건인 이유는 초검·복검 등의 중복분을 제거하였기 때문이다. 전라·충청·경기·강원 등의 4개 道를 중심으로 하여 경상도와 평안도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황해도나 함경도의 검안 중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없다.⁸⁾ 시기별로 나누어보면 대체로 1895-1907년간으로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가장 오래된 그림은 1843년에 전라도에서 그려진 것인데, 갑오경장 이전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검안의 수효가 극히 적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진 사례도 1건만이 확인되고 있다.

〈표 1〉 검안에 그려진 흉기 그림의 시기별·지역별 분포 (단위: 개)

	1843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계
전라	1			5	5	3		1			1	2	3	1	22
충청		1	1	1	3	5		2	5	1			1	1	21
경기		1	2		1	2	2	1			3		3	3	18
강원				1	1	1	1		6	3		2		1	16
경상		3		3	3				1				1		11
평안			1		1	2				1	1				6
계	1	5	4	10	14	13	3	4	12	5	5	4	8	6	94

주: 개성, 인천 등은 경기에 포함하였음. 전국 8도 중에서 황해와 함경은 해당 사항 없음. 일부 사례에서 흉기의 수가 사건의 빈도보다 많은데, 이는 동일 사건에 2종 이상의 흉기가 사용된 경우도 있기 때문임.

8) 검안의 전체 표본에 대한 통계 정리를 수행한 金溝, 1998 「奎章閣 소장 '檢案'의 기초적 검토」, 『朝鮮時代史學報』 4, 163-169면에서는, 황해도 108건, 충청도 99건, 경상도 94건 등의 순서의 지역별 분포가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검안의 현존 수량과 흉기 그림이 그려진 검안의 현존 수량 간에는 별로 상관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확인은 이 논문의 분석 대상이 가지는 偏倚(bias)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분석 대상 시기가 비록 1895-1907년으로 제약되어 있지만, 이 논문의 분석은 갑오경장 이전의 조선후기 全盤에 대한 대표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표 1〉에서 확인되는 1843년 검안 외에도 檢題, 檢跋 등을 비롯한 각종의 관련 자료에서 18세기부터 1907년에 이르는 시기까지의 문서 형식이나 구성에서 상당히 강한 연속성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895-1907년의 검안에서 나타나는 기재 양식 및 특징이 甲午 이전 검안의 遺制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검안에 그려진 흉기를 종류별로 유형화하여 시기별·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 본 것이 〈표 2〉이다. 분류의 기준은 현대와의 비교를 위해 제시한 〈표 3〉에 준하게끔 하였다. 빈도를 보면, 몽둥이·농기구·칼·돌 등을 위주로 하면서 끈·총기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당대의 살인 사건이 대체로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이었으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출현 빈도가 높은 흉기는 곧 당대인의 생활과 밀접한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농기구나 가재도구를 비롯하여 주위에 손을 뻗쳐 잡히는 것을 그대로 범행에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표 2〉에서는 당시 농경사회의 모습이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다. 검안에 그려진 흉기는 살인의 事件史를 재구성하기 위한 소재가 됨과 동시에, 당대인의 일상생활 그 자체, 즉 생활사의 복원과 고증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표 2〉 검안에 그려진 흉기의 종류와 시기별·지역별 분포 (단위: 개)

(A) 시기별

	1843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계
몽둥이*		1	1	4	3	3	2	3	3	1			1	2	24
농기구		1	1	3	6				2	2	2	1	2		20
칼	1			1	4	5		1	3		1	1	2	1	20
돌		1	1			4			2	2	1				11
끈							1		2						3
총기		1									1			1	3
기타		1	1	2	1	1						2	3	2	13
계	1	5	4	10	14	13	3	4	12	5	5	4	8	6	94

(B) 지역별

	전라	충청	경기	강원	경상	평안	계
몽둥이*	4	6	6	4	3	1	24
농기구	7	4	3	2	4		20
칼	7	5	2	3		3	20
돌	2	2	2	2	2	1	11
끈			1	2			3
총기	1		1			1	3
기타	1	4	3	3	2		13
계	22	21	18	16	11	6	94

주: * 몽둥이에는 지겟작대기가 포함되어 있음.

〈표 3〉은 살인 현장과 범행 도구의 구체적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당대의 생활상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는 사실이 현대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다.⁹⁾ 최근 20여 년 동안 한국의 살인 범죄에 사용된 범행 도구를 보면 전통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시대상을 반영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예컨대, 1995년 이전에 사용된 범행 도구 중의 하나인 棍棒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컴퓨터가 대신하고 있다. 곤봉은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체육에서 활용되기도 하고, 각 가정에 상시적으로 비치되어 있던 생활용품 중의 하나였다. 반면에 컴퓨터는 199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야 활발히 보급되었으며, 보급 초기에는 ‘귀하신 몸’이었고, 2000년대에 들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공구, 유리병, 독극물, 마취제 등은 산업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농경사회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가 살인에 여전히 활용되고 있으며, 도끼, 낫, 농기구류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시대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살인 도구로서 널리 쓰이고 있는 것으로는 칼(도검), 몽둥이, 돌, 줄(끈) 등을 들 수 있겠다.

9) 〈표 2〉와 〈표 3〉의 직접적인 비교에서 큰 의미를 찾을 필요는 없다. 이 논문에서는 전체 살인 사건이 아닌, 흉기 그림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표 3〉 살인 범죄의 범행 도구, 1990-2013 (단위: 건, %)

범행도구 \ 기간	1990-1995	1996-2001	2002-2007	2008-2013
칼(도검)	831 (61.7)	2,346 (67.8)	3,197 (67.2)	3,868 (68.3)
공구	24 (1.8)	95 (2.7)	239 (5.0)	381 (6.7)
줄·끈·테이프·밧줄·전선	59 (4.4)	140 (4.0)	167 (3.5)	179 (3.2)
유리병	8 (0.6)	30 (0.9)	54 (1.1)	149 (2.6)
도끼·낫·농기구류	33 (2.4)	71 (2.1)	111 (2.3)	109 (1.9)
독극물	32 (2.4)	87 (2.5)	126 (2.6)	91 (1.6)
몽둥이	23 (1.7)	70 (2.0)	93 (2.0)	88 (1.6)
총기·모의총기	74 (5.5)	82 (2.4)	110 (2.3)	71 (1.3)
돌	35 (2.6)	44 (1.3)	38 (0.8)	45 (0.8)
마취제	0 (0.0)	3 (0.1)	2 (0.0)	7 (0.1)
컴퓨터	0 (0.0)	1 (0.0)	7 (0.1)	4 (0.1)
곤봉	2 (0.1)	0 (0.0)	0 (0.0)	0 (0.0)
기타	226 (16.8)	490 (14.2)	615 (12.9)	674 (11.9)
계	1,347 (100)	3,459 (100)	4,759 (100)	5,666 (100)

주: 살인 검거 건수 중 범행 도구 '所持無'를 제외하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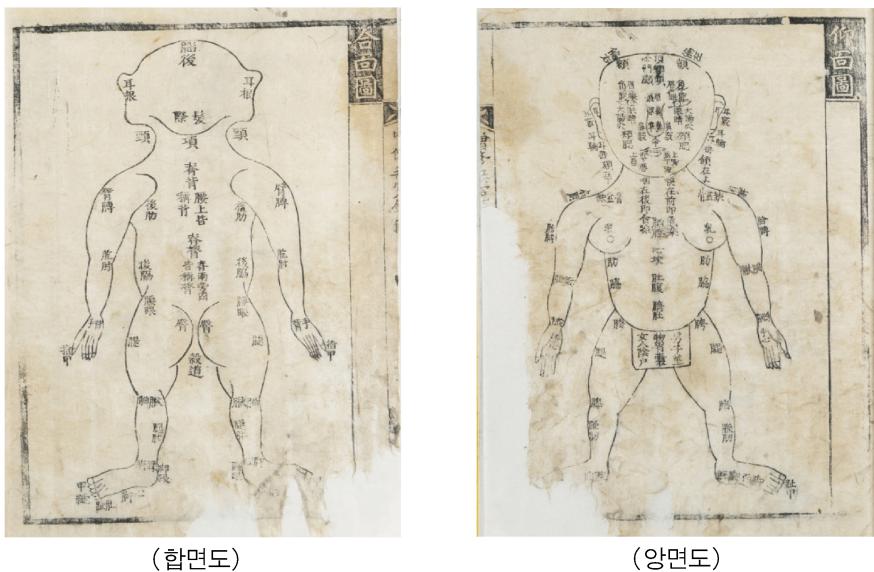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경찰청범죄통계(경찰청), 검거통계원표.

3. 검안에 그려진 흉기의 실체

검안에 그려진 흉기 그림은 실제의 모양을 사진에 담는 듯한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대략적인 형태, 즉 개형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기본적으로 實寫가 아니라는 점에서 흉기 그림은 일종의 스캐치 수준의 것일 뿐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실물을 그대로 대어놓고 그런 듯한 경우도 보인다. 또한 전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려 놓은 경우도 있고, 특징적인 일부분만 그려 놓은 경우도 보인다. 이렇게 실제와의 괴리를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함은, 마치 〈그림 1〉에서와 같이 시장의 양면과 합면이 짜리몽땅한 아기처럼 그려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¹⁰⁾ 대체로 실

제의 비율과는 전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려진 모양을 토대로 실물의 이미지를 상상해서는 곤란하다. 결국은 개형 옆에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각종의 치수를 토대로 실체를 복원해야만 당대인의 감각을 넘어서는 생생한 재현이 가능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흉기의 실제 크기나 형태를 가늠해 본다.

〈그림 1〉『증수무원록』에 그려져 있는 尸帳의 仰面과 合面



출처: 『增修無冤錄』(一蓑古 340.6-J527m).

1) 몽동이

앞의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몽동이로 분류되는 흉기는 총 24종이다. 초검과 복검 등의 중복을 감안하면 31건으로 집계된다. 여기서 몽동이란 대개 ‘棒木’,

10) 『무원록』과 마찬가지로 시장 역시 조선 고유의 양식이 아니며, 중국에서 건너와 조금 변형된 것이다. 또한 시장의 양면과 합면은 동양의 여러 의학서와 마찬가지로 실제의 인체비례와는 거리가 먼 상징적 개형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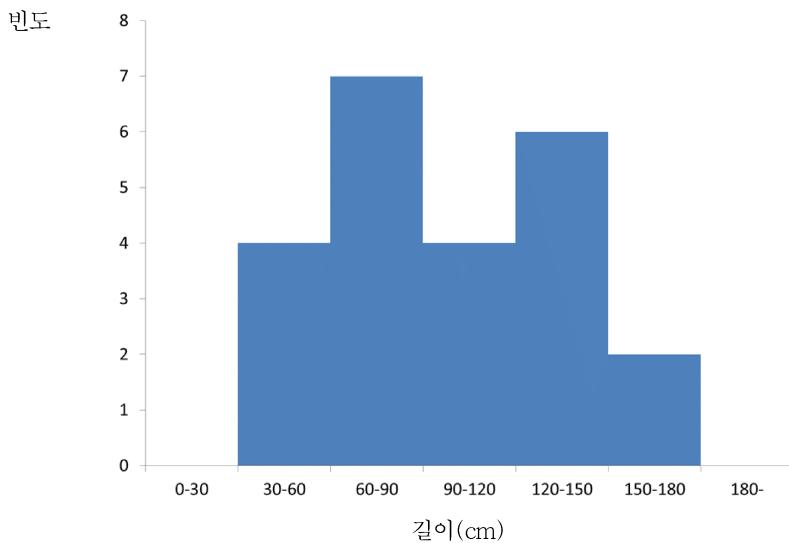
‘松棒’, ‘松棒木’, ‘松木棒’ 등으로 표현되는 도구이며, ‘折丫木’, ‘丫棒’, ‘桃木丫杖’ 등으로 표현되는 지겟작대기나 ‘육모방망이[六隅椎]’, ‘모난 나무방망이[有隅木椎]’ 등으로 표현되는 방망이를 포함시킨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나무의 소재나 재질에 대해서 병기한 사례가 많다.¹¹⁾ ‘작은 봉동이[小棒木]’ 등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두 개의 봉동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를 가리킨 것이며, ‘짧은 봉동이[短棒]’라고만 하거나, ‘長斫木’과 같이 용도를 표현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器仗’이라고만 되어 있어 상세한 설명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림의 개형으로 보아 봉동이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가 보인다.

31건의 사례 중에서 측정치가 존재하지 않거나 초·복검의 중복분을 제거하면,¹²⁾ 분석에 유효한 봉동이의 수효는 23건이 된다. 이들에 대하여 길이의 평균값을 구해 보면, 대략 101.7cm 정도로 계산된다. 현대 야구에서 방망이(baseball bat) 길이의 최대치를 106.7cm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략 야구방망이 정도의 길이가 살인에 사용된 봉동이의 평균값에 상응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체 23건의 길이에 대한 분포인 <그림 2>의 히스토그램을 보면, 101.7cm라는 평균값이 전체 분포를 대표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분포의 개형이 正規分布(normal distribution)처럼 가운데가 불록한 鐘形(bell shape)이 아니라,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最頻值(mode)가 양립하고 있는 雙峰形(bimodal shape)이기 때문이다. 결국 살인 범행에 사용된 봉동이는 야구방망이의 2/3 길이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그 두 배의 길이에 해당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1) ‘多南木’, ‘達陰木’, ‘眞木’, ‘松木’, ‘櫟木’, ‘柞木’, ‘栗木’, ‘檀木’ 등이 보인다. ‘두릅나무’라는 한글 표현도 있다. “집물을 부술 때 가운데가 끊어져 가지 끝이 찢어”진 사례처럼, 상태를 표현하기도 했다. <부록 2>의 (42) 참조.

12) 초검과 복검의 길이가 다른 경우, 긴 쪽을 채택하였다. 이하의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2〉 봉동이 23건의 길이 분포



주: 길이의 ‘A-B’라는 표현은 “A 초과, B 이하”를 가리킴.

그런데 最頻 구간 중에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봉동이의 길이가 120cm를 넘는 경우라면, 살인 범행을 위해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보기是很 어렵다. 예컨대, 가장 긴 봉동이의 길이가 164.5cm로서, 당시 성인의 평균 신장에 버금 가는 수준이었다. 이는 해당 봉동이가 미리 준비해 둔 살인 도구가 아님을, 다시 말해, 범행 당시에 주변에 널려 있던 기다란 봉동이를 그대로 집어서 휘둘렀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¹³⁾

2) 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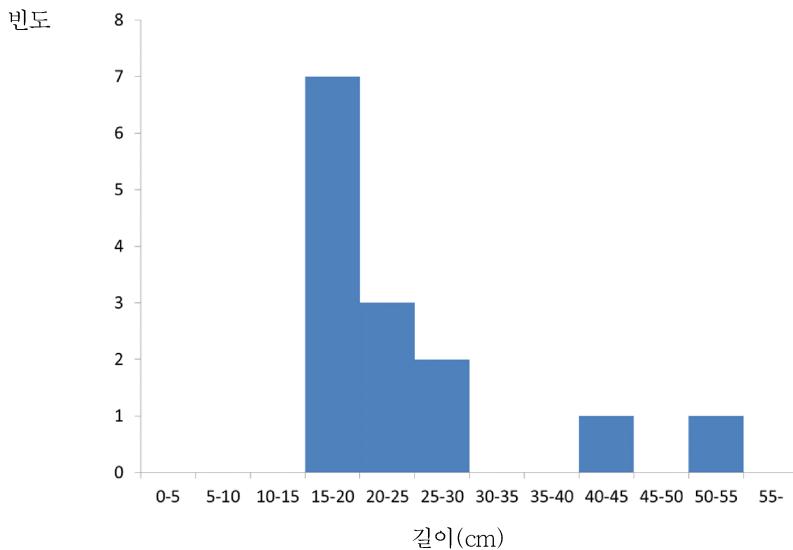
〈표 2〉에서 칼로 분류한 흉기는 총 20종이다. 초검과 복검 등의 증복을 감안하면 26건으로 집계된다. 창날[鎗刃] 1건과 竹槍 1건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칼의 종류로는 단순히 ‘칼[刀子]’이나 ‘칼[鉤]’이라고 한 사례를 비롯하여, ‘식칼[食刀]’이

13) 단, 육모방망이의 경우, 51.7cm로서 가장 짧은 편에 속하는데, 한말의 순라꾼이나 포졸이 사용한 것으로 이해되는(심재우, 앞의 책, 230면) 특수한 도구에 해당한다.

나 ‘주머니칼[囊刀]’도 보인다. 특이한 사례로서 ‘刀子兩刃’ 또는 ‘刀子雙刃’이라고 하여 날이 두 개 달린 칼도 있다.¹⁴⁾ 대개 칼날[刃]과 자루[柄]의 규격을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며, 칼날의 수치만 적어놓은 경우, 전체 길이만 적어 놓은 경우 등이 보인다.

몽동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6건의 사례 중에서 측정치가 존재하지 않거나 초·복검의 중복분을 제거하면,¹⁵⁾ 분석에 유효한 칼의 수효는 14건이 된다. 이들에 대하여 길이의 평균값을 구해 보면, 대략 24.4cm 정도로 계산된다.¹⁶⁾ 현대 가정의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칼의 길이가 대략 30cm 가량인 것과 비교하더라도 짧은 편이다. 그런데 전체 14건의 길이에 대한 히스토그램인 〈그림 3〉을 보면, 17-18cm 부근에 사례가 가장 많고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right-skewed)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칼 14건의 길이 분포



주: 길이의 ‘A-B’라는 표현은 “A 초과, B 이하”를 가리킴.

14) 두 개의 칼날 중에서 하나는 절단·중절되었고, 나머지는 촉지로 인해 굴곡되었다. 〈부록 2〉의 (66) 참조.

15) 죽창도 제외하였다.

16) 칼날과 자루의 길이가 각기 기재된 경우 양자를 합하여 전체 길이를 구했다.

검안에 그려진 칼 그림의 개형만 보아서는 식칼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림 3〉의 분포는 대부분의 칼이 실제로는 식칼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식칼이 아니라 과도보다도 짧은¹⁷⁾ 주머니칼이 범행에 자주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정보이다. 식칼임이 명시되어 있는 사례는 27.6cm와 54.4cm의 두 가지인데, 특히 54.4cm로 측정된 사례는 날의 길이가 42.2cm, 자루의 길이가 12.1cm로서 현대인의 감각보다 자루에 비하여 날이 훨씬 긴 형태의 식칼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살인 범죄에 사용된 칼이 대개 살상용 무기로 인식되는 ‘劍’이 아닌 ‘刀’였다는 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머니칼이 자주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은 당시 사람들이 (호신용이든 다른 목적이든) 칼을 휴대하는 일이 빈번하였고, 그것이 언제든지 살인의 도구로 돌변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3) 농기구

여기서의 농기구라는 분류에는 낫 · 도끼까지 포함되는데, 이는 〈표 3〉에 준하게끔 유형화했기 때문이다. 낫의 경우, ‘낫[鎌]’ 또는 ‘낫[鎌子]’으로 표현되어 있고, 낫날[刃]과 낫자루[柄]가 구분된 경우가 많다. 도끼의 경우, ‘도끼[斧子]’ 전체가 범행에 쓰인 경우도 있지만, ‘도깃자루[斧柯]’만 활용된 사례도 있다. 그 자루의材木이 물푸레나무[水青木]임을 밝혀 농기도 했다. 괭이[銚伊]의 경우에도 쇠날[鐵刃]과 나무자루[木柄]로 구분되어 있고, 큰작두[大斫器]의 자루나무[柄木]도 보인다. 빨래방망이[洗踏椎]의 경우에도, 몽둥이 쪽보다는 농기구 쪽에 가깝다고 보았다.

농기구 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흉기는 절굿공이인데, 모두 나무 절굿공이이다.¹⁸⁾ 총 9건의 그림 중에서 수치가 확인되는 것을 대상으로 초 · 복검의 중복분을 제외하면 4건만이 유효하게 확인된다.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은 43.1cm, 가장 긴 것

17) 현대의 식칼 또는 과도의 길이에 관해서는 정석준 · 채종민, 2006 「최근 살인 사건의 살해도구에 관한 연구: 칼을 중심으로」, 『대한수사과학지』 1(2), 33면을 참조하라.

18) ‘杵’, ‘春杵’, ‘臼杵’, ‘杵臼木’, ‘搗臼杵(결구杵)’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은 113.8cm이며, 전체를 평균하면 약 90.1cm가 도출된다. 앞서 살펴본 봉동이의 사례에서 최빈값 중의 하나였던, 야구방망이보다 조금 짧은 수준에 해당하는 길이이다. 아마도 이 정도의 길이가 때려죽이는 용도로는 가장 애용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특수한 사례로서, 언뜻 보면 서로 다른 도구인 듯하지만, 같은 범주의 농기구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고무래를 들 수 있다. ‘불고무래[火丁木]’ 또는 ‘잿고무래[灰丁木]’뿐만 아니라 밀개[推介木]도 고무래로 볼 수 있고,¹⁹⁾ 그림의 개형이나 길이로 판단컨대 ‘桴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림 4〉 살인 범행에 쓰인 ‘고무래’ 유형의 지역별 농기구



경남 김해군(3)

충북 옥천군(68)

경북 지례군(6)

전북 고부군(36)

주: 하단의 번호는 〈부록 2〉에서의 일련번호를 카리糍.

4) 기타

그 외에 살인에 사용된 범행 도구로는 돌·총기·끈·담뱃대·차꼬·신발·등잔걸이·목침·무쇠화로·판목·말뚝 등을 들 수 있다. 돌의 경우, 상당히 높은 빈도로 살인에 활용되었으며, 그 종류나 크기 또한 다양했다. ‘돌[石子]’, ‘큰 돌[大石]’, ‘작은 돌[小石]’, ‘모나지 않은 돌[無隅石]’, ‘돌덩이[石塊]’, ‘砌石’ 등이 보인

19) 정승철, 2013 「‘고무래’의 방언 분포와 방언형의 분화」, 『國語學』 67에 따르면, ‘고무래’의 방언형은 크게 네 가지로서, 중부의 ‘고무래/고물개’, 경북과 전남 남서부의 ‘밀개/미래’, 서남과 경남의 ‘당그래/당글개’, 기타로 구분된다. 따라서 〈그림 4〉의 (6)에서 보이는 ‘推介木’은 경북 방언의 ‘밀개/미래’에 상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타로 구분된 방언 중에서 충북 옥천의 ‘고밀개/괴밀개’가 보이는데, 이는 〈그림 4〉의 (68)에서 보이는 ‘丁木’을 소리 내어 읽는 방식에 대한 참고가 될 수 있겠다.

다. 돌의 경우, 크기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의미 있는 정보는 역시 무게일 것이다. 그림 옆에 무게가 적혀 있는 사례는 2건이 확인되며, 하나는 4.5kg, 다른 하나는 15kg으로 환산된다. 요즘의 시멘트 벽돌 한 장의 무게가 3kg 이하라는 점을 고려하면, 꽤나 무거운 돌로 살해하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총기는 ‘銃’ 또는 ‘鳥銃’ 등으로 표현되었고, 총대[銃柄]와 彈丸을 구분해 둔 사례도 보인다.²⁰⁾ 끈으로는 전대[木纏帶·纏帶]와 새끼줄[藁索]이 있다. 새끼줄의 경우, 난타하기 위해 결박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서(奎 21535), 그림은 그려져 있지 않지만 세 가닥에 대해 각각 999.9cm, 227.6cm, 155.2cm라는 수치가 기록되어 있다. 담뱃대[烟竹簇]는 1건만 확인되는데, 그 길이는 65.5cm 가량이다.

나무차꼬[桎木]는 길이가 158.6cm, 너비가 20.7cm인데, 그림 상으로는 6칸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육전조례』의 목차꼬[木着庫]를 비롯한 “형구의 경우 명칭만 나와 있어 모양이나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예시한 『형정도첩』의 그림과 비교해 볼 수 있다.²¹⁾ 선교사 리텔이 “고종 때 포도 청에 수감되어 차꼬를 찼는데 이는 목판 두 개를 맞대어 놓은 것으로 길이가 약 4 미터, 폭이 15센티미터에 달한다고 묘사되어 있”음과도 비교될 수 있겠다.

〈그림 5〉 검안과 『형정도첩』의 목차꼬 비교



(10)



심재우, 앞의 책, 96면.

주: 하단의 번호는 〈부록 2〉에서의 일련번호를 카리킴.

20) 총으로 쏘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때려서 죽이는[行打] 사례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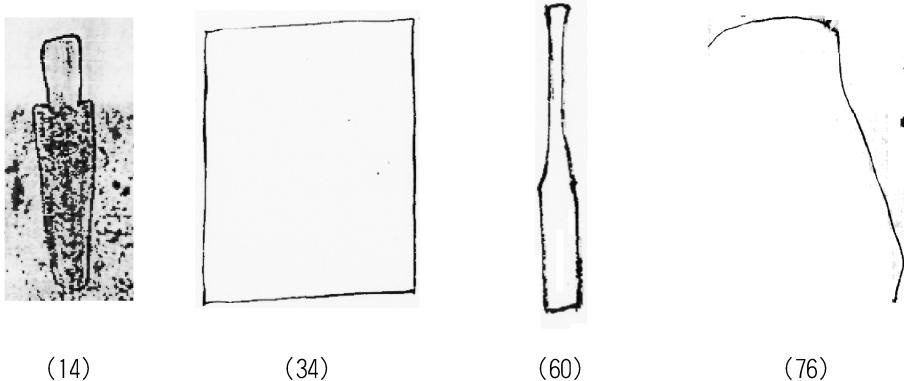
21) 심재우, 앞의 책, 95-96면.

당시에 어느 집에서나 흔히 볼 수 있었던 나무베개 즉 ‘木枕’ 또는 ‘소나무목침[松木枕]’도 2건이 확인된다. 목침찜이나 목침뜸질 등으로 표현되듯이, 당시에는 목침으로 사람을 때리는 일이 꽤나 흔한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살인에 사용된 도구 중에서 신발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는 나막신·미투리·구두 등을 들 수 있다. 신발로 때릴 수도 있겠지만, 밟거나 차서 죽인 경우에도 당시에 신고 있던 신발을 범행의 도구라고 인정한 것이다. 나머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4. 실측의 정밀성과 객관성에 대한 검토

그렇다면 검안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은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 우선 확인되는 사실은, 그러나 안 그러나 상관없을 법한 그림들이 더러 눈에 띈다는 점이다. 예컨대, <그림 6>에 정리해 둔 것처럼 실측치 없이 개형만 간략하게 그려진 사례들이 있다. 그 중에서 (14), (34), (76)의 경우, ‘절굿공이’, ‘목침’, ‘돌’ 등의 설명이 덧붙여져 있지 않다면, 도무지 무엇을 그려 놓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다. 반면에 <그림 7>에서와 같이 박달나무를 그리면서 굽은 가지와 나무껍질까지 마치 예술 작품처럼 정성껏 묘사한 경우가 있어, 검시에 동원된 수령 또는 圖畫 담당자의 개성에 따라 그 표현의 정도가 천차만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 실측 없이 개형만 간략히 그려 놓은 사례



주: 하단의 번호는 〈부록 2〉에서의 일련번호를 가리킴.

〈그림 7〉 나뭇가지를 상세히 묘사한 박달나무 사례



(59)

주: 하단의 번호는 〈부록 2〉에서의 일련번호를 가리킴.

그렇다면 검안에 그려진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문법’, 또는 표준화의 정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검안의 그림을 다른 자료에서의 사례와 비교해 볼 수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통시대 또는 당대의 관련 그림을 모두 비교·분석하기는 무리이므로, 두 가지 사례만 살펴본다. 우선 纓帶의 사례인데, 검안에서의 두 가지 경우(44b, 44c)와 『악학궤범』에 그려져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아 비교

해 보면, <그림 8>과 같다. 검안에서는 물론이고 전통시대의 다른 자료에서도 충분히 개성이 발휘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전대 그림의 개형 비교



(44b)

(44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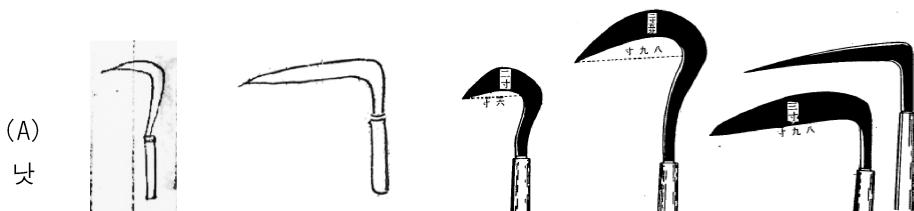
『樂學軌範』9, 「冠服圖說」

주: 하단의 번호는 <부록 2>에서의 일련번호를 카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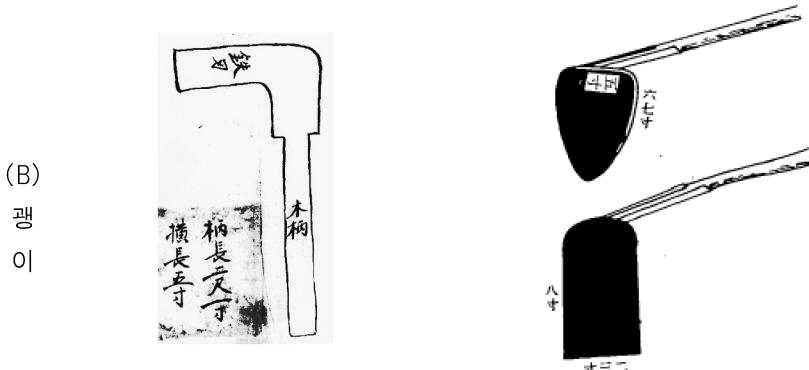
다른 한 가지의 사례는, 당대의 그림이지만 근대적 접근을 시도한 일본인이 그린 그림을 검안의 그것과 비교해보는 것이다. 이 논문의 분석 대상 시기에 포함되는 1904년에 일본인에 의해 출판된 대한제국기 농업 관계 서적에서 농기구 중의 낫과 팽이 그림이 실측 수치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²²⁾ <그림 9>는 검안의 사례와의 비교를 위해 한 자리에 모아 본 것이다. 개형에서는 충분한 유사성이 확인되지만, 수치의 기입 또는 병기 방식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2) 加藤末郎, 1904 『韓國農業論』, 蒙華房, 140-141면.

〈그림 9〉 낫과 팽이 그림의 개형 비교



加藤末郎, 앞의 책, 141면.



加藤末郎, 앞의 책, 141면.

주: 하단의 번호는 〈부록 2〉에서의 일련번호를 카리킴.

그렇게 표준화된 측정 기법에 따라, 또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검시 담당자들에 의해 검안이 작성되었다면, 초검 및 복검 등 여러 차례에 걸친 검험의 과정에서 작성된 그림들이 과연 사실에 가까운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지 되물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실물과 그림의 일치 여부는 판단할 수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당대에 그려진 그림과 그림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할 것이다. 초검·복검 등의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흉기 그림이 묘사된 사례를 발췌하여 비교함으로써 측정치의 정밀성을 확인해 보면 어떨까? 이는 각각의 검험이相互獨立的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표 4〉는 각종 흉기 그림을 〈표 2〉에 제시한 유형별로 나누어 여러 차례의 검험에서 등장하는 개형 및 수치를 비교하고, 수치상에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오차의 비율을 계산해 본 것이다. 우선 몽동이의 사례를 보면, 두 가지 검안에 기재된 정보가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64)와 거의 차이 나지 않는 사례(2)도 있지만, 대체로 10%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9), (30)의 경우, 각각의 검안에서 소나무몽동이 다섯 개를 측정해 놓았는데, 개형은 거의 같지만 그 배치 순서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독립적으로 검험이 이루어졌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례가 될 수 있다. (71)의 경우, 엄청난 수준의 오차가 관찰되는데, 이는 자[尺]와 치[寸]의 단위를 단순히 잘못 誤記한 사례로 보인다.

〈표 4〉 초·복검의 그림 개형 및 측정치 비교

유형	일련번호	개형	오차	비율	청구기호
몽동이	(2)	유사	3.4cm	2.5%	奎 20244
	(29),(30)	유사	17.2cm	41.5%	奎 21439,奎 21440
	(35)	유사	0.7cm	12.7%	奎 21486
	(42)	유사	8.6cm	11.1%	奎 21496
	(64)	유사	-	-	奎 21823
	(71)	상이	105.5cm	900.7%	奎 21903
칼	(25)	동일	-	-	奎 21415
	(49)-(e),(f)	유사	2cm	22.2%	奎 21579
	(56)-(d),(e),(f)	유사(초복검), 상이(삼검)	-	-	奎 21636
	(66)	상이	n/a	n/a	奎 21864
	(67)	동일	-	-	奎 21874
농기구	(6)	유사	-	-	奎 21287
	(20)	상이	10.3cm	12.0%	奎 21392
	(56)-(a),(b),(c)	유사(초복검), 상이(삼검)	-	-	奎 21636

돌	(49)-(a),(b)	유사	13.8cm	21.1%	奎 21579
	(49)-(c),(d)	유사	6.9cm	44.5%	奎 21579
총기	(27)	상이	n/a	n/a	奎 21428
	(31),(32)	상이	-	-	奎 21453,奎 21454
끈	(44)-(b),(c)	상이	110.4cm	58.2%	奎 21498
기타	(13)	상이	12.1cm	11.3%	奎 21347
	(16)	상이	1.8cm	7.5%	奎 21369
	(19)	유사	-	-	奎 21391
	(24)	상이	1.7cm	2.0%	奎 21410

주: 일련번호는 <부록 2>에서 부여된 것임. 오차는 여러 측정값 중 가장 큰 수치 하나를 대표로 선정하여 제시하였음. 가장 큰 수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큰 수치를 선택함. 비율은 작은 쪽에 비해서 큰 쪽이 얼마나 더 큰지를 나타냄. '-'는 오차가 없음을, 'n/a'는 수치 정보가 없음을 나타냄.

다음으로 칼의 사례를 보면, (25), (56) 및 (67)의 3건에서 초검과 복검의 그림 개형 및 수치가 완전히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치 동일인이 작성했다고 보더라도 무리가 없을 정도이며, 과연 초검과 복검이 별도로 실시되었는지조차 의문스러울 정도이다. 단, (56)에서는 삼검의 그림을 추가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수치는 그대로이지만 그림 개형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판단컨대, 초검과 복검이 상호 독립적으로 수행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49)에서 일부 수치의 차이가 보이지만 크게 주목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비록 수치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66)에서는 초검과 복검의 그림 개형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개의 칼날 중의 하나가 이미 부러져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범행할 때에 부러진 것인지에 대한 기술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초검과 복검 사이의 상호 독립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농기구와 돌의 사례에서는 칼의 사례와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외에는 특기할 만한 내용이 없다.

총기의 사례로는 2건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양자 모두 초검과 복검의 그림 솜씨가 무척 대조적이다. 초검은 실제 형태를 대략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

반면, 복검은 간략하게 그려져 있다. 또한 (27)에서는 초검과 복검의 개형이 좌우 반전된 형태이고, (31), (32)에서는 초검은 가로로, 복검은 세로로 그려져 있어, 각기 독립적으로 작성되었음이 확실한 듯하다. 끈의 사례는 1건만 비교 가능한데, 그림의 개형도 전혀 다르고, 길이나 너비 역시 도저히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측정되어 있다.

기타 4건의 사례가 있다. 첫째는 중간이 부러진 소나무 판목이다. 초검에서는 부러진 쪽이 위로 가게 그려 놓은 반면에, 복검에서는 부러진 쪽이 아래로 가게끔 그려 놓아, 초검과 복검에서 정반대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길이, 너비 등의 수치도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초검에서는 등 두께를 기재해 놓은 반면, 복검에서는 그렇지 않다. 둘째는 나막신이다. 초검과 복검에서의 그림 개형이 전혀 다르고, 길이와 굽높이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초검에서는 너비가 기재되어 있지만, 복검에서는 그렇지 않다. 셋째는 소나무 등잔걸이이다. 초검과 복검에서 그림의 각도가 조금 다를 뿐 개형은 유사하다. 또한 길이, 둘레, 두께, 무게 등의 수치가 정확히 일치한다. 넷째는 다섯 개의 뽕나무가지를 묶은 것이다. 그림의 개형도 다르고, 수치를 적은 순서 및 측정값 등이 모두 다르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초검과 복검의 정보가 상이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유사하거나 거의 일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양자의 정보가 유사한 경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다. 첫째, 초검관과 복검관이 모두 치밀하게 조사하고 측정하였다. 둘째, 초검관과 복검관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팀을 꾸려 검험하였거나, 둘 중 한 쪽이 나머지 한 쪽의 검험 기록을 복사했다.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후자가 더 설득력을 가진다. 왜냐하면 양자의 기록이 같은 경우, 그림의 개형에서 수치를 기재한 위치까지 정확히 동일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초검과 복검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실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검의 측정치와 복검의 측정치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해 서는 곤란하다.

다음으로 양자의 정보에서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해석을

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에서의 측정이 정확히 이루 어지지 않았다. 또는 양쪽 모두 부정확할 수도 있다. 둘째, 양자가 독립적으로 검 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측임을 가정한다면 측정값의 오차는 연구자가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실측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검시관이 가지고 다니는 자의 길이에서 오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조선후기에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1895년 이후라면 신식 자가 통용되던 시기였겠지만, 검시관이 활용한 구래의 黃鐘尺에서는 이러한 오류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세 가지의 가능성 중에서는 어떤 쪽을 채택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검험의 기본이 전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5. 검안에 흉기를 그려 놓은 이유

결국 초검과 복검의 정보가 같거나 같지 않거나 관계없이, 검안에 기록된 각종의 수치 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검안에 그림을 왜 그려 넣었나?” 또는 나아가 “도대체 검안을 왜 작성했나?”라는 질문에까지 이를 수 있다. 여기에 답하기 위해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우선 흉기를 비롯한 범행 관련 그림을 검안에 그려 넣는 것이 중국의 『무원록』이라는 매뉴얼에 규정된 검험의 공식적 절차에 속함을 지적할 수 있다. 조선전기의 『신주무원록』과 조선후기의 『증수무원록대전』 또는 『증수무원록언해』에서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으며,²³⁾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이 세 곳에 분산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첫째, 벽돌, 돌, 절굿공이, 몽둥이, 쇠붙이, 칼 대나무 조각 등 사람을 죽인 흉기

23) 『무원록』에서 이미 검안에 그림을 그려 넣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은, 검시 과정에서의 현장 및 흉기 묘사가 조선만의 전통이 아니라 중국의 영향 아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 현장에서 발견되면, 상처에 대어 맞춰보고 서로 같은지 아닌지를 검사하고, 흉기의 이름과 수량을 모두 기록하여 설명하고, 크고 작음과 길고 짧음의 규격을 채고, 봉하여 표지를 붙여서 상부에 발송한다.²⁴⁾ 둘째, 끈이 서로 겹쳐지거나 나누어진 곳을 검사하되, 둘로 나누어진 곳을 각각 재고, 그 끝을 가져가 尸帳에 개형을 그린다.²⁵⁾셋째, 만약 날이 있는 물건[刃物]을 수습했으면 거두어서 크고 작음을 살펴보아 종이에 대고 모양을 그려 넣고, 만약 일찍이 수습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지 물어보고 또 처음 신고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양을 그리게끔 하고, 그리기를 마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림 아래에 서명을 하게 한다.²⁶⁾

이들 세 가지 규정 중에서 맨 앞의 것은 검험의 총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흉기의 규격을 측정하고 그림으로 그려 넣는 것이 절차상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었고, 해당 흉기를 검안과 함께 상부에 올려 보내기도 하였음을 보여준다.²⁷⁾ 그 다음의 둘은 각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각 목을 매달아 죽은 경우와 칼에 찔려 죽은 경우에 대해 그림을 어떻게 그려 넣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흉기의 실물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초 목격자로 하여금 그림의 개형을 그려 넣게끔 하였다는 점이다.²⁸⁾

아무튼 그렇게 규정된 매뉴얼에 근거한다면, 검안에 그림을 삽입하는 것은 의무 조항이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존하는 검안에서 그림이 확인되는 사

24) 김호 역, 2003 『역율함을 없게 하라: 신주무원록』, 사계절, 258-259면; 송철의 · 이현희 · 장윤희 · 황문환, 2004 『역주 증수무원록 인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24-125면.

25) 김호 역, 앞의 책, 364-365면; 송철의 · 이현희 · 장윤희 · 황문환, 앞의 책, 255-257면.

26) 김호 역, 앞의 책, 428-429면; 송철의 · 이현희 · 장윤희 · 황문환, 앞의 책, 351-354면.

27) 『신주무원록』에서는 흉기의 실물을 검안과 함께 올려 보내는 것으로, 『증수무원록인해』에서는 흉기의 실물을 현지에 보관하다가 상부의 요청이 있으면 올려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의 사소한 차이를 제외하면, 조선전기와 조선후기에 있어서의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만약 흉기의 실물을 올려 보내는 것이 정례화되어 있었다면, 검안에 그려진 그림은 단지 보조적 역할만 하였을 것이다.

28) 현존하는 검안 중에서 이러한 실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만약 목격자의 기억을 통해 재현된 그림의 경우라면, 아마도 실측의 수치가 병기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례는 전체의 1/6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실제로 그림을 그려 넣는 행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범행 과정에 흉기가 사용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검안들의 사례를 추가로 검토해 보면, 왜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 및 사실 관계를 일일이 밝혀 두고 있음이 다시 확인된다.²⁹⁾

예컨대, 『廣州府東部面長禮村致死男人鄭九甲獄事初檢文案案』(奎 21178)을 보면, 맨 뒤에 “사람을 죽인 흉기가 없음[行兇器仗無乎事]”이 명기되어 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돌은 흔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집어와서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 없”다[石子段許多之石本無軌定現納故不得圖畫]고 한 사례도 보인다(奎 21486).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 사례로서는, 1897년에 전라도 남평군에서 김조이[金召史]가盧俊五를 때려 죽인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때 사용한 몽둥이는 두 가지였는데, 흥두깨[弘搗介]로 머리뼈[頭顱]를 때리고, 다듬잇방망이[砧木]로 다시 뇌[腦]를 때려서 죽인 것이다. 그런데 큰 방망이는 불에 타서 없어졌으므로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다(奎 21631). 그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그리지 않거나 “그림을 그려 올려 보낸다[圖畫上送]”는 절차와 형식은 언제나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검시에 사용하는 척도가 횡종척임은 『증수무원록』에 규정되어 있으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周尺 또는 營造尺이 사용되었다.³⁰⁾ 〈부록 2〉에 등장하는 ‘官尺’, ‘鎰尺’, ‘檢尺’, ‘屍尺’ 등은 모두 횡종척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의 모든 길이 환산은 1척=34.48cm를 기준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래서 굳이 어떤 자로 측정하였는지를 밝히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過剩(redundant)의 정보를 적어 놓기도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정보를 종합해 본다면, 검안에 그림을 그리고 수치를 기입하는, 또는

29) 흉기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맨손이나 맨발로 때리거나 밟아서 죽인 빈도가 높을 것이다. 실제로 흉기가 그려져 있지 않은 검안에서 사망의 實因은 대개 機打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주먹이나 발을 그려 놓은 사례는 찾을 수 없다.

30) 조영준, 앞의 논문, 149-150면.

그림을 그리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등의 현상을, 단순히 매뉴얼에 충실하고자 하는 조선후기 행정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고도의 형식성 또는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³¹⁾ 객관성을 확보하는 과학적 접근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조차 확보되지 않았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보다는 일단 검안을 작성해서 상부에 보고한다는 그 절차에 치중하였기에, 범죄의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본래의 목적과는 괴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6.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검안에 그려진 흉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圖畫上送’의 역사적 의의까지 평가해 보았다. 흉기 그림을 그려 놓는 본래의 이유는 증빙이나 객관성 확보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존하는 검안에서의 흉기 그림에서는 그것이 과연 정의 구현을 위한 정밀한 기록과 묘사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따라서 정밀한 현장 검증이나 과학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에는 무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현대와 같이 정밀한 감식까지 필요한 사회가 아니었다고 본다면, 그 정도의 정보 취합만으로도 현명한 판결을 위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과거에 대해 현대적 기준의 지나치게 엄격한잣대를 들이댈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의 기초 분석을 계기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후속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당대의 검시에 대한 입체적인 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방향으로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검안에 그려져 있는 그림 중에서 흉기 이외의 살인 현장에 대한 스케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미술

31) 이는 18-19세기에 걸쳐 장기적으로 관찰되는 국가 재정 운영의 경직성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사 차원의 접근을 포함한 학제적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신장 및 두발 측정이나 연령 추정 등에 대한 엄밀성이나 정확성을 계량 분석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셋째, 전통 시대의 검시가 가지는 객관성 결여가 ‘전근대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문제인지, 특정의 목적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지 등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서양을 막론한 비교사적 차원에서의 사례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 논문을 통해 최초로 제기된 가설로서, 검안에 그려진 갖가지 흥기의 그림이 당대인의 생활상을 엿보는 데에는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풍속화나 의궤 등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던 당대의 器物을—비록 살인이라는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이기는 하지만—하층민의 생생한 생활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꽤나 반가운 일이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흥기의 실측치도 없다. 그만큼 검안에 그려진 그림은 현대인의 과거 인식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논문투고일(2016. 4. 28), 심사일(2016. 5. 20), 게재확정일(2016. 6. 13)

참고문헌

※ 부록에 따로 정리해 둔 검안은 생략함.

『樂學軌範』

『增修無冤錄』(一簋古 340.6-J527m)

『廣州府東部面長禮村致死男人鄭九甲獄事初檢文案』(奎 21178)

『山清郡生林里鴨谷洞致死女人金召史檢屍初檢五檢文案』(奎 26569)

『忠淸南道洪州郡縣內面下切致死男人朴永寬文案』(奎 21512)

金 濩, 1998 「奎章閣 소장 '檢案'의 기초적 검토」, 『朝鮮時代史學報』 4

_____, 2006 『원통함을 없게 하라: 조선의 법의학과 《무원록》의 세계』, 프로네시스

김호 역, 2003 『억울함을 없게 하라: 신주무원록』, 사계절

서울大學校 奎章閣, 1998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繢集: 史部 5』, 民昌文化社

송철의 · 이현희 · 장윤희 · 황문화, 2004 『역주 증수무원록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심재우, 2011 『네 죄를 고하여라: 법률과 형벌로 읽는 조선』, 산처럼

유승희, 2008 『미궁에 빠진 조선: 누가 진짜 살인자인가』, 글향아리

정석준 · 채종민, 2006 「최근 살인 사건의 살해도구에 관한 연구: 칼을 중심으로」, 『대한수사과학지』 1(2)

정승철, 2013 「'고무래'의 방언 분포와 방언형의 문화」, 『國語學』 67

조영준, 2012 「조선시대 문헌의 身長 정보와 尺度 문제: 軍籍과 檢案을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41

加藤末郎, 1904 『韓國農業論』, 裳華房

국가통계포털(KOSIS), 경찰청범죄통계(경찰청), 검거통계원표

Abstract**Reinterpretation of Murder Scene Inspections from 1895 to 1907:**

An Analysis of the Pictures of Homicide Tools in Post-mortem Reports

Cho, Young-Jun

A traditional post-mortem report, called kōman, was one of the records typically used to investigate murder cases during the late Chosōn Dynasty in Korea. Despite the variety of pictures available in kōman, only the shape of corpses (including the front and back views)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researchers thus far. The current study applies a new methodology that involves pictures of homicide tools used at the end of kōman. In particular, rough sketches of murder weapons and their dimensions as reported in kōman are empirically analyzed.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ther the weapons have been actually measured is reevaluated. Second, the objectivity of a post-mortem examination is critically analyzed. Third, the reinterpretation of the report process indicates the formalism of public administration during on-the-spot inspections in the late Chosōn Dynasty. In addit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e value of kōman as a historical material in conducting research on the history of everyday life.

Key words : post-mortem reports, murder weapon, homicide, forensic science, on-the-spot inspection, yardsticks, history of everyday life

〈부록 1〉 분석 대상 검안 목록 (표제 가나다 순)

- 『加平郡北面竹屯里致死男人申雲五致死男人李文學獄事初檢文案』(奎 21401)
『江陵郡內面雲東洞致死男人李云之李敬化屍身檢驗文案』(奎 21489)
『江原道裁判所在囚許大之間供記』(奎 21486)
『江原道淮陽郡長楊面上新院里日耕洞致死女人朴召史案』(奎 21184)
『江華府煤音島致死男兒崔福萬獄事檢案』(奎 21391)
『開城郡西部館前里致死男人金基弘獄事文案』(奎 21409)
『開城府西部館前里致死女人金召史獄事交河郡覆檢文案』(奎 21814)
『居昌郡川內面松亭酒店洞致死劉文五初檢文案』(奎 26330)
『檢屍文案』(奎 26294)
『結城郡加山面中里致死男兒姜今用屍身初檢文案』(奎 21883)
『古阜郡雨日面漢橋里致死男人金春基屍體金興萬屍體初檢案』(奎 21488)
『公州郡陽也里面斗滿里致死男人崔八用文案』(奎 21331)
『光陽郡鳳岡面江邊村致死男人李學祚屍體案』(奎 21629)
『交河郡衙洞面金陵里致死男人金興仁獄事初檢文案』(奎 21371)
『金山郡金泉面下新基里致死男人李達石獄事文案』(奎 21319)
『金堤郡洪山面外里後麓被打致死男人金必萬獄事覆檢文案』(奎 21440)
『金堤郡洪山面外里後麓被打致死男人金必萬獄事初檢文案』(奎 21439)
『金海郡駕洛面匙滿里致死男人朴人淳覆檢文案』(奎 21176)
『南原郡西奉坊致死男人僧奉典初檢案』(奎 21571)
『南平郡金馬山面本村致死男人洪道三盧俊五屍身初檢案』(奎 21631)
『魯城郡光石面論山里致死女人朴召史屍體文案』(奎 21641)
『潭陽郡牛峙面松山里致死女人吳召史初檢文案』(奎 21630)
『大邱郡西上面東山里致死男人黃達守屍身初檢文案』(奎 21651)
『萬頃縣縣內面被踢致死男人金少孫覆檢文案』(古 5125-93)
『泗川郡松山面鰲島致死男人孫今山屍身文案』(奎 21739)
『文義郡二道面外三里致死男人吳讚錫屍身文案』(奎 2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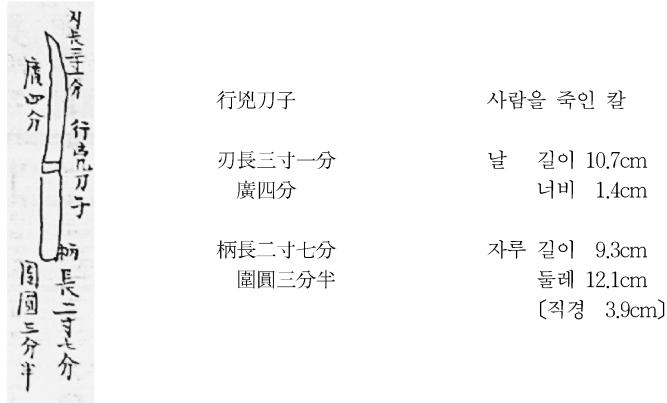
- 『扶安郡東道面仙隱洞致死女人李寡梁姓獄事初檢取招文案』(奎 21425)
- 『楊根郡邑內面甕巖里致死男人金三同獄事文案』(奎 21392)
- 『楊州郡青松面大田里被腸致死男人黃時京及坪村里被打致死男人尹友三獄事初檢文案』(奎 21508)
- 『驪州郡介軍山面香谷被刺致死男人金寅圭獄事查報文案』(奎 21642)
- 『驪州郡吉川面華隱里致死男人李廷來獄事覆檢文案』(奎 21535)
- 『寧越郡郡內面上松里小地名學堂谷致死男李達成獄事初檢案』(奎 21457)
- 『沃川郡東面支石里致死女人韓召史獄事檢驗文案』(奎 21877)
- 『龍潭郡一西面好美洞被打致死男人洪甲得被打後將養不效致死男人洪鍾述獄事案』(奎 21823)
- 『原州郡好梅谷面二里小地名平川村致死女人劉召史屍體初檢文案』(奎 21495)
- 『恩津郡松山面東注院致死男人名不知池哥屍體文案』(奎 21275)
- 『義城郡南部面道下里致死男人朴學只初檢文案』(奎 21356)
- 『伊川郡方丈面佳下里致死男人申萬才初檢案』(奎 21493)
- 『益山郡己梯面西豆里致死男人鄭德順獄事文案』(奎 21428)
- 『仁同郡北三面蘆田洞致死男人朴又石獄事文案』(奎 21288)
- 『麟蹄郡郡內面長承坪致死男人金文一初檢文案』(奎 21492)
- 『麟蹄郡南面青邱里致死男人李化善獄事初檢文案』(奎 21497)
- 『麟蹄郡北面元通里致死男人李周益獄事初檢文案』(奎 21498)
- 『仁川府多所面事項洞致死男人李命集獄事初檢文案』(奎 21671)
- 『全羅南道長興郡大興面扇子島致死男人李順基韓明順兩獄檢案謄本成冊』(奎 21627)
- 『全羅北道茂長郡莊子山面小渴里致死總角男姜長京及致死男人丁道一兩屍體文案』(奎 21636)
- 『全州郡上關面沙玉里致死男人李得西李德章兩屍身檢驗文案』(奎 21431)
- 『旌善郡郡內下里致死男人崔順甫初檢文案』(奎 21490)
- 『知禮郡北面林溪里致死女人姜召史獄事文案』(奎 21287)
- 『砥平郡北面分地洞被打致死男人姜君心獄事初檢文案』(奎 21534)

- 『砥平郡上東面三山里致死男人元顯奉獄事初檢文案』(奎 21343)
- 『砥平郡下東面草川里致死男人金正善獄事覆檢文案』(奎 21454)
- 『砥平郡下東面草川里致死男人金正善獄事初檢文案』(奎 21453)
- 『眞寶郡東面花梅里致死男人裴龍周獄事案』(奎 25046)
- 『鎮安郡南面德峴里被打致死男人鄭昌杵屍身案』(奎 21579)
- 『鎮安郡二西面上回里被刺致死男人金元榮屍身初檢案』(奎 21362)
- 『昌原郡東面檀溪里致死男人金性化獄事初檢案』(奎 26326)
- 『清州郡西江內二面新村里致死男人鄭夏鎔鄭成用 兩屍身案』(奎 21861)
- 『春川郡東外二作面北方面致死男人柳乙用獄事初檢文案』(奎 21455)
- 『忠州郡南邊面道庄洞致死男人金云西屍身初檢文案』(奎 21594)
- 『忠州郡北邊面方井洞致死男人朴鍾倫獄事文案』(奎 21864)
- 『忠州郡沙伊面元忠里致死男人趙憲球與崔厚龍獄事初檢文案』(奎 21723)
- 『忠州郡周柳面乞山致死男人李允汝屍身文案』(奎 21903)
- 『忠清南道燕岐郡南面月用城里致死男人金永錄屍身初檢案』(奎 21315)
- 『泰川郡東邑內吉下里致死人朴桂信屍身初檢案』(奎 21381)
- 『坡州郡雲泉面盤山里致死男人朴順化獄事案』(奎 21410)
- 『坡州郡七井面汶山浦致死男人黃稷屍身文案』(奎 21369)
- 『平康郡榆津面津浦里致死男人都哥屍體文案』(奎 21347)
- 『平安北道各郡檢屍文案』(奎 26232)
- 『海美郡城內致死男人金尙德屍身文案』(奎 21329)
- 『海美郡城內致死男人尹子英屍身初檢文案』(奎 21882)
- 『洪州郡大甘介面後洞致死男人文致道屍身初檢文案』(奎 20244)
- 『黃潤郡郡內面小溪里致死女人具氏及致死男人白學汝檢驗文案翻譯』(奎 21615)
- 『懷德郡外南面楮田里致死男人宋欽瑞屍身及山所洞致死男人李興哲屍身覆檢文案』(奎 21407)
- 『懷仁郡西面鹽峙里致死男人金凡水文案』(奎 21874)
- 『橫城郡井谷面蘆洞致死女人洪召史獄事文案』(奎 21496)

〈부록 2〉 검안에 그려져 있는 살인 범죄의 범행 도구 (청구기호 순)

* 길이는 황종척 1척=34.48cm, 무게는 1냥=37.5g을 적용하여 환산하였고,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제시하였음. [] 안의 직경은 직접 계산한 값이며, 둘레를 원주율(π)로 나누어 구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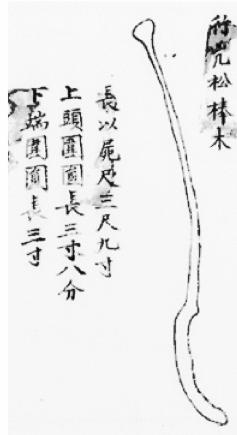
(1) 『萬頃縣縣內面被踢致死男人金少孫覆檢文案』(古 5125-93), 1843년, 전라도 만경현.



(2) 『洪州郡大甘介面後洞致死男人文致道屍身初檢文案』(奎 20244), 1899년, 충청도 흥주군.



(b) 覆檢



行兇松棒木

사람을 죽인 소나무몽둥이

長以尾尺三尺九寸

길이 134.5cm (시척)

上頭圍圓長三寸八分

둘레길이 13.1cm (윗머리)

下端圍圓長三寸

10.3cm (아래끝)

(3) 『金海郡駕洛面匙満里致死男人朴人淳覆檢文案』(奎 21176), 1895, 경상도 김해군.



折丫木圖畫

부러진 지켓작대기 그림

길이 79.3cm

灰丁木圖畫

잿고무래 그림

길이 79.3cm

無隅石圖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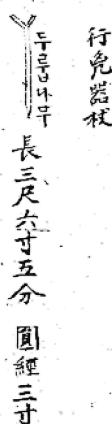
뭉우리돌 그림

길이 17.2cm

너비 13.8cm

두께 1.7cm

- (4) 『江原道淮陽郡長楊面上新院里日耕洞致死女人朴召史案』(奎 21184), 1897년, 강원
도 회양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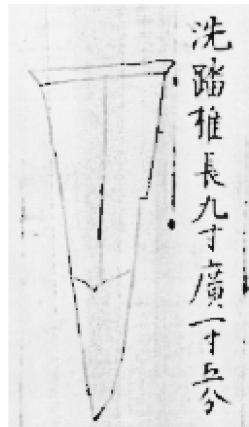
行兇器杖

사람을 죽인 흉기

두릅나무
長三尺六寸五分
圓經三寸

두릅나무
길이 125.9cm
둘레 10.3cm
[직경 3.3cm]

- (5) 『恩津郡松山面東注院致死男人名不知池哥屍體文案』(奎 21275), 1898년, 충청도 은
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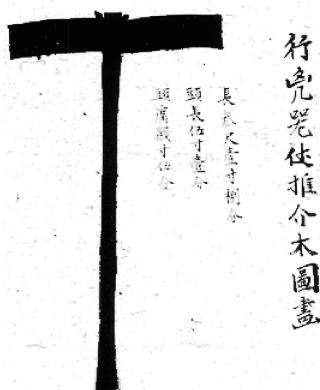


洗踏椎
長九寸
廣一寸五分

빨랫방망이
길이 31.0cm
너비 5.2cm

(6) 『知禮郡北面林溪里致死女人姜召史獄事文案』(奎 21287), 1898년, 경상도 지례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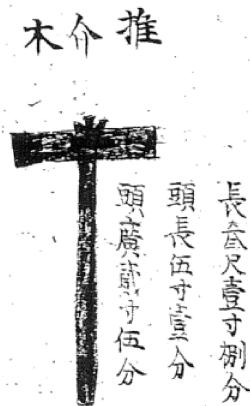
(a) 初檢



行凶器杖推介木圖畫 사람을 죽인 흉기
나무밀개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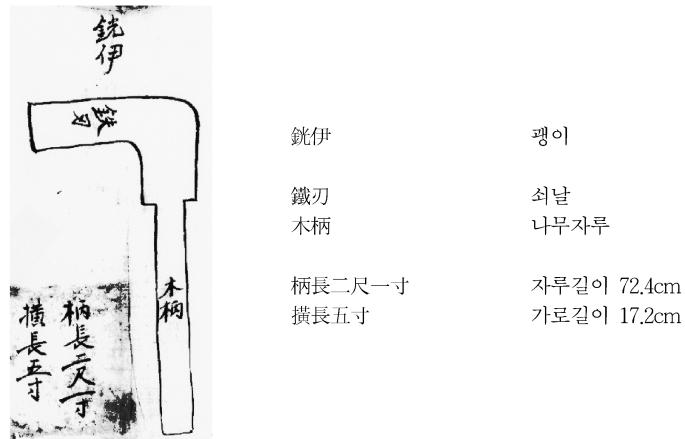
長參尺壹寸捌分	길이 109.6cm
頭長伍寸壹分	머리길이 17.6cm
頭廣貳寸伍分	머리너비 8.6cm

(b) 覆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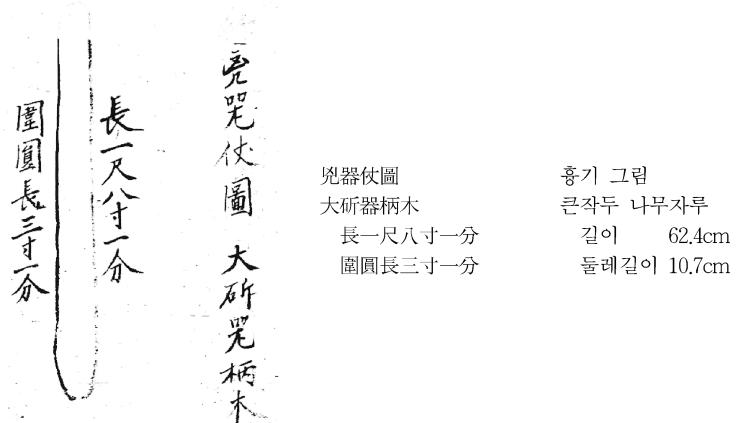


推介木 나무밀개
長參尺壹寸捌分 길이 109.6cm
頭長伍寸壹分 머리길이 17.6cm
頭廣貳寸伍分 머리너비 8.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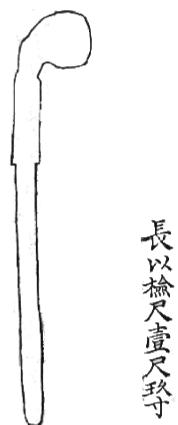
(7) 『仁同郡北三面蘆田洞致死男人朴又石獄事文案』(奎 21288), 1897년, 경상도 인동군.



(8) 『忠清南道燕岐郡南面月用城里致死男人金永錄屍身初檢案』(奎 21315), 1903년, 충청도 연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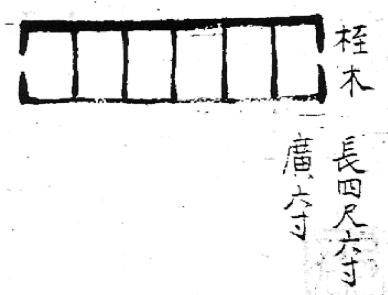
(9) 『金郡金泉面下新基里致死男人李達石獄事文案』(奎 21319), 1897년, 경상도 김산군.



長以檢尺壹尺玖寸

길이 65.5cm (검척)

(10) 『海美郡城內致死男人金尙德屍身文案』(奎 21329), 1906년, 충청도 해미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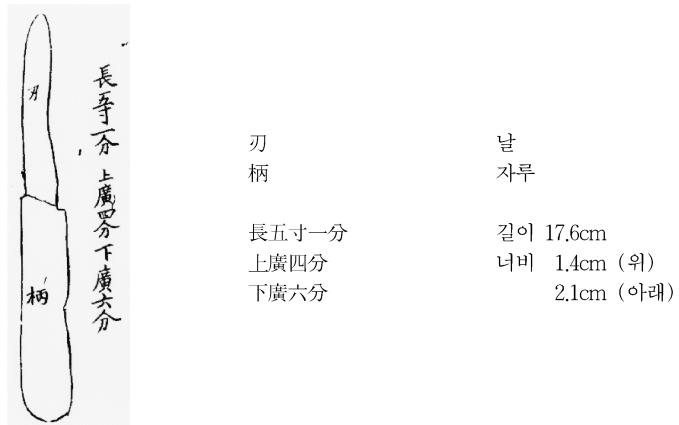
椅木

長四尺六寸
廣六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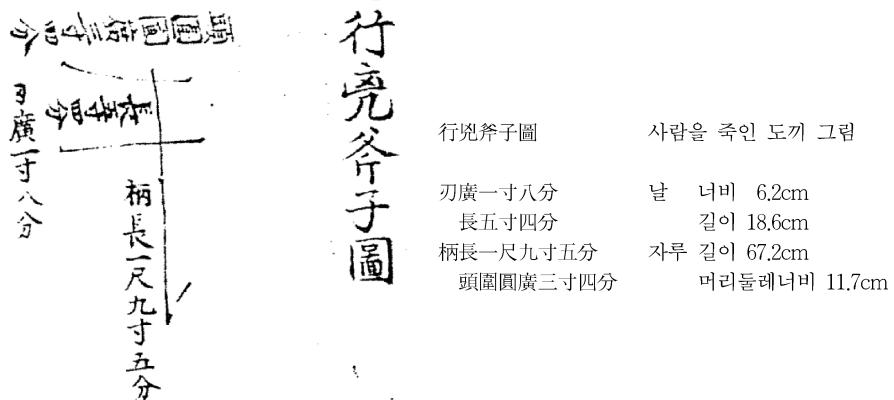
차꼬

길이 158.6cm
너비 20.7cm

(11) 『公州郡陽也里面斗滿里致死男人崔八用文案』(奎 21331), 1907년, 충청도 공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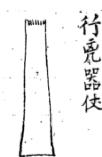


(12) 『砥平郡上東面三山里致死男人元顯奉獄事初檢文案』(奎 21343), 1896년, 경기도 지평군.



(13) 『平康郡榆津面津浦里致死男人都哥屍體文案』(奎 21347), 1898년, 강원도 평강군.

(a) 初檢



上長三尺四寸五分
下廣四寸六分
五寸六分
六分五厘

脊厚一寸二分

行兇器仗

사람을 죽인 흉기

길이 119.0cm
너비 15.9cm (위)
19.3cm (아래)
등 두께 4.1cm

(b) 覆檢



上長三尺一寸
下廣五寸二分
上廣五寸二分
下廣四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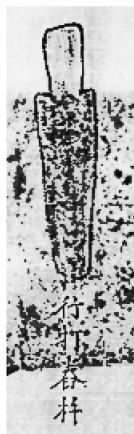
中折松板木

行兇器仗
中折松板木사람을 죽인 흉기^{가운데가 부러진 소나무판목}

위
아래

길이 106.9cm
너비 17.9cm (위)
13.8cm (아래)

(14) 『義城郡南部面道下里致死男人朴學只初檢文案』(奎 21356), 1897년, 경상도 의성군.



行打春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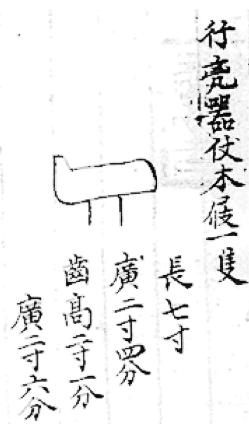
사람을 때린 절굿공이

(15) 『鎮安郡二西面上回里被刺致死男人金元榮屍身初檢案』(奎 21362), 1898년, 전라도
진안군.

刃長三寸九分
柄長三寸三分날 13.4cm
자루 11.4cm

(16) 『坡州郡七井面汶山浦致死男人黃稷屍身文案』(奎 21369), 1907년, 경기도 파주군.

(a) 初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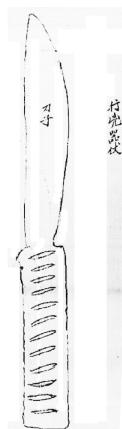
行凶器仗	사람을 죽인 흉기
木屐一隻	나막신 한 짝
長七寸	길이 24.1cm
廣二寸四分	너비 8.3cm
齒高二寸一分	굽높이 7.2cm
廣二寸六分	너비 9.0cm

(b) 覆檢



木屐	나막신
長七寸五分	길이 25.9cm
齒高二寸三分	굽높이 7.9cm

- (17) 『交河郡衙洞面金陵里致死男人金興仁獄事初檢文案』(奎 21371), 1906년, 경기도 고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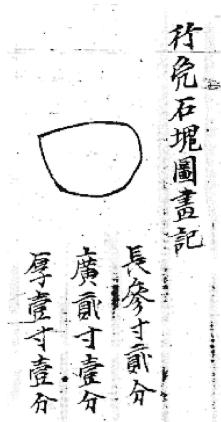
行凶器仗

刀子

사람을 죽인 흉기

칼

- (18) 『泰川郡東邑內吉下里致死人朴桂信屍身初檢案』(奎 21381), 1896년, 평안도 구성군.



行兇石塊圖畫記

長參寸貳分

廣貳寸壹分

厚壹寸壹分

사람을 죽인 돌덩이 그림

길이 11.0cm

너비 7.2cm

두께 3.8cm

(19) 『江華府煤音島致死男兒崔福萬獄事檢案』(奎 21391), 1906년, 경기도 강화부.

(a) 初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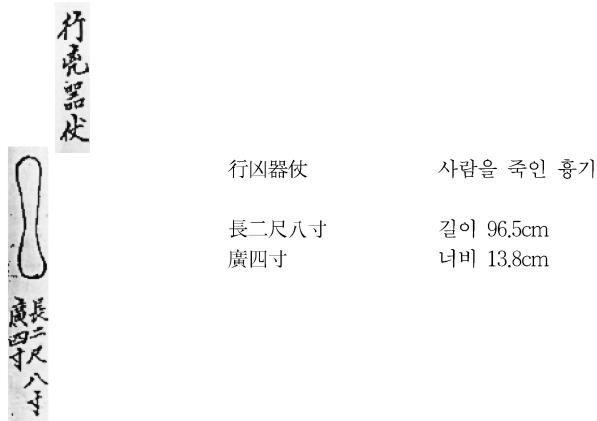
圖畫	그림
中折	가운데가 부러짐
木燈檠	나무등잔걸이
柱長一尺三寸	기둥길이 44.8cm
柱圍三寸五分	기둥둘레 12.1cm
燈檠板	등잔걸이판
圓圍二尺二寸五分	둘레 77.6cm
厚一寸五分	두께 5.2cm
重四兩	무게 150g

(b) 覆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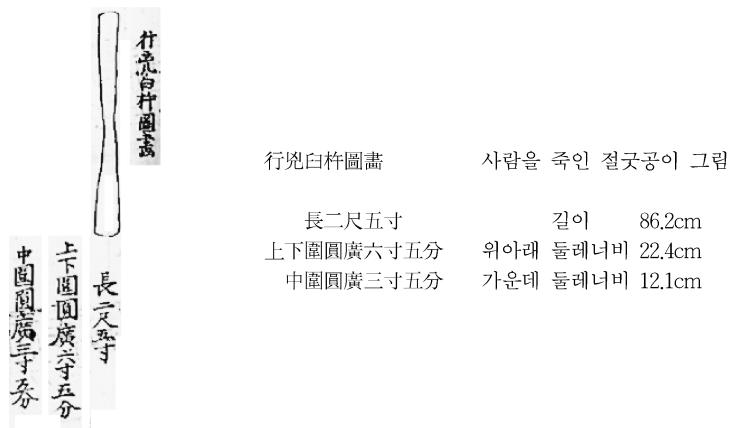
松木燈檠	소나무 등잔걸이
中折	가운데가 부러짐
柱長一尺三寸	기둥길이 44.8cm
柱圓三寸五分	기둥둘레 12.1cm
燈檠板圍二尺二寸五分	등잔걸이판둘레 77.6cm
厚一寸五分	두께 5.2cm
重四兩重	무게 150g

(20) 『楊根郡邑內面甕巖里致死男人金三同獄事文案』(奎 21392), 1906년, 경기도 양근군.

(a) 初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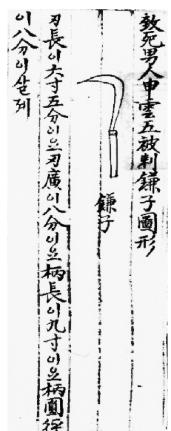


(b) 覆檢



(21) 『加平郡北面竹屯里致死男人申雲五致死男人李文學獄事初檢文案』(奎 21401), 1904년, 경기도 가평군.

(a)



致死男人申雲五
被刺鎌子圖形

죽음에 이를 남자 신운오가
찔린 낫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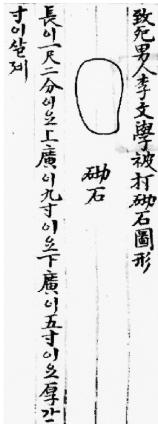
鎌子

낫

刃長이六寸五分이요
刃廣이八分이요
柄長이九寸이요
柄圓徑이八分이살체

날 길이가 22.4cm이고,
날 너비가 2.8cm이고,
자루 길이가 31.0cm이고,
자루 직경이 2.8cm임.

(b)



致死男人李文學被打砌石圖形

죽음에 이를 남자 이문학이
맞은 석돌 그림

砌石

長이一尺二分이요
上廣이九寸이요
下廣이五寸이요
厚가二寸이살체

길이가 41.4cm이고
위 너비가 31.0cm이고,
아래 너비가 17.2cm이고,
두께가 6.9cm임.

(22) 『懷德郡外南面楮田里致死男人宋欽瑞屍身及山所洞致死男人李興哲屍身覆檢文案』

(奎 21407), 1899년, 충청도 문의군.



行兇石子圖

사람을 죽인 돌 그림

圓長一尺四寸二分
高一寸一分
闊一寸一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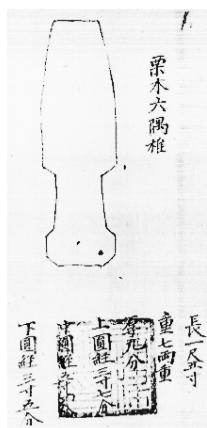
[돌레길이 49.0cm]

[높이 3.8cm]

[직경 15.6cm]

(23) 『開城郡西部館前里致死男人金基弘獄事文案』(奎 21409), 1907년, 경기도 통진군.

(a) 初檢



栗木六隅椎

밤나무 육모방망이

長一尺五寸
重七兩重
厚九分
上圓經三寸七分
中圓經五寸四分
下圓經三寸五分

[길이 51.7cm]

[무게 262.5g]

[두께 31.0cm]

[위 직경 12.8cm]

[가운데 직경 18.6cm]

[아래 직경 12.1cm]

(b) 覆檢

行凶器仗
栗木六隅椎

長官尺一尺五寸

사람을 죽인 흉기
밤나무 육모방망이

길이 51.7cm (관척)

(24) 『坡州郡雲泉面盤山里致死男人朴順化獄事案』(奎 21410), 1907년, 경기도 파주군.

(a) 覆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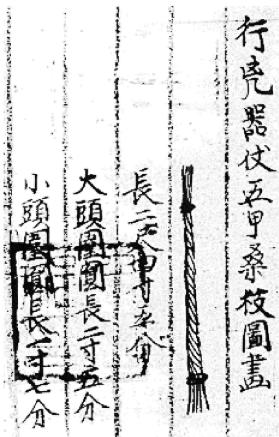
行凶器仗
五甲桑枝圖畫長二尺四寸五分
大頭圍圓長二寸五分
小頭圍圓長一寸七分사람을 죽인 흉기
다섯겹 뽕나무가지 그림길이 84.5cm
큰머리둘레길이 8.6cm
작은머리둘레길이 5.9cm

(b) 初檢



行凶器仗	사람을 죽인 흉기
五甲桑枝圖畫	다섯겹 뽕나무가지 그림
上圍圓三寸	위둘레 10.3cm
下圍圓一寸八分	아래둘레 6.2cm
長二尺五寸	길이 86.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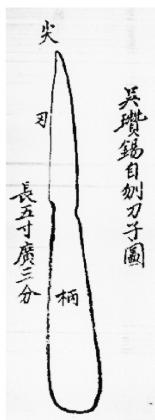
(b) 覆檢



行凶器仗	사람을 죽인 흉기
五甲桑枝圖畫	다섯겹 뽕나무가지 그림
長二尺四寸五分	길이 84.5cm
大頭圍圓長二寸五分	큰머리둘레길이 8.6cm
小頭圍圓長一寸七分	작은머리둘레길이 5.9cm

(25) 『文義郡二道面外三里致死男人吳讚錫屍身文案』(奎 21415), 1899년, 충청도 문의 군목천군.

(a) 初檢



吳讚錫自刎刀子圖 오찬석이 스스로 자른 칼 그림

尖
刃
柄

끝
날
자루

長五寸
廣三分

길이 17.2cm
너비 1.0cm

(b) 覆檢



吳讚錫自刎刀子圖 오찬석이 스스로 자른 칼 그림

尖
刃
柄

끝
날
자루

長五寸
廣三分

길이 17.2cm
너비 1.0cm

- (26) 『扶安郡東道面仙隱洞致死女人李寡梁姓獄事初檢取招文案』(奎 21425), 1906년, 전
라도 부안군.



自刎刀子圖

以官尺尺量則
刃長爲貳寸五分
廣爲肆分
柄長爲貳寸五分
廣爲陸分是齊

스스로 자른 칼 그림

관척으로 재어보니,
날길이는 8.6cm이고,
너비는 1.4cm이고,
자루길이는 8.6cm이고,
너비는 2.1cm임.

- (27) 『益山郡己梯面西豆里致死男人鄭德順獄事文案』(奎 21428), 1907년, 전라도 익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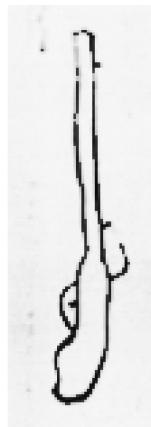
(a) 初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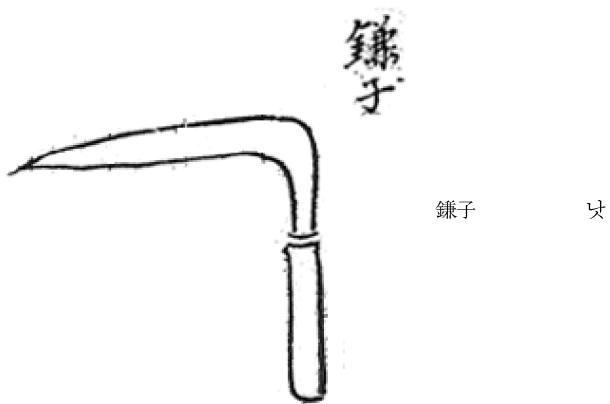
行打鳥銃一柄

사람을 때린 조총 한 자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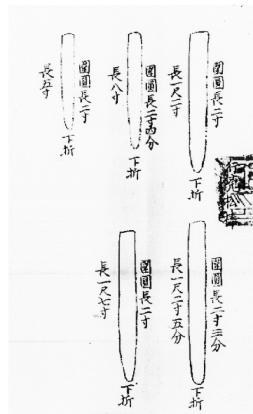
(b) 覆檢



(28) 『全州郡上關面沙玉里致死男人李得西李德章兩屍身檢驗文案』(奎 21431), 1906년,
전라도 전주군.



- (29) 『金堤郡洪山面外里後麓被打致死男人金必萬獄事初檢文案』(奎 21439), 1906년, 전
라도 김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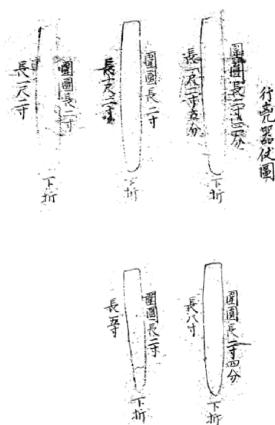


行兇松棒

사람을 죽인 소나무몽둥이

둘레길이 6.9cm, 길이 41.4cm,
아래가 부러짐
둘레길이 8.3cm, 길이 27.6cm,
아래가 부러짐
둘레길이 6.9cm, 길이 17.2cm,
아래가 부러짐
둘레길이 7.9cm, 길이 43.1cm,
아래가 부러짐
둘레길이 6.9cm, 길이 58.6cm,
아래가 부러짐

- (30) 『金堤郡洪山面外里後麓被打致死男人金必萬獄事覆檢文案』(奎 21440), 1906년, 전
라도 고부군.



行兇器杖圖

사람을 죽인 흉기 그림

둘레길이 7.9cm, 길이 43.1cm,
아래가 부러짐
둘레길이 6.9cm, 길이 41.4cm,
아래가 부러짐
둘레길이 6.9cm, 길이 41.4cm,
아래가 부러짐
둘레길이 8.3cm, 길이 27.6cm,
아래가 부러짐
둘레길이 6.9cm, 길이 17.2cm,
아래가 부러짐

- (31) 『砥平郡下東面草川里致死男人金正善獄事初檢文案』(奎 21453), 1895년, 경기도 지평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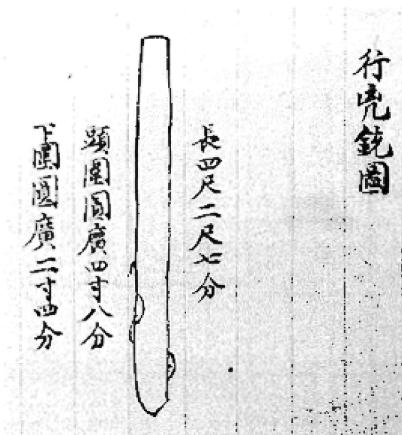
行兇鳥銃

사람을 죽인 조총

長四尺二寸七分
頭圍圓經四寸八分
下圍圓經二寸四分
以上用官尺

길이 147.2cm
머리둘레 직경 16.6cm
아래둘레 직경 8.3cm
(이상 관척을 씀)

- (32) 『砥平郡下東面草川里致死男人金正善獄事覆檢文案』(奎 21454), 1895년, 경기도 지평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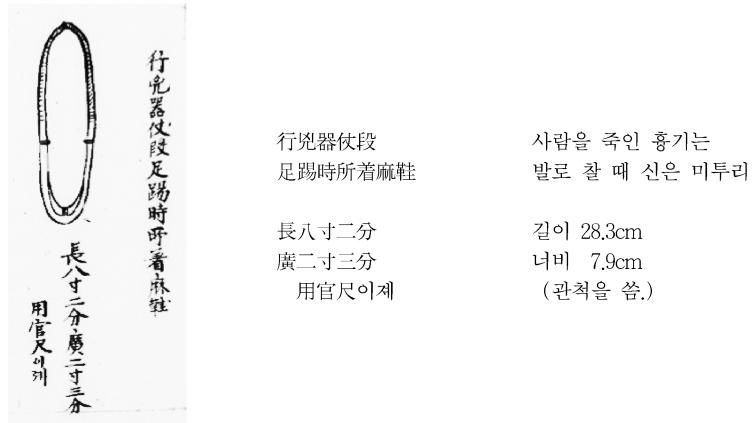
行兇銃圖

사람을 죽인 총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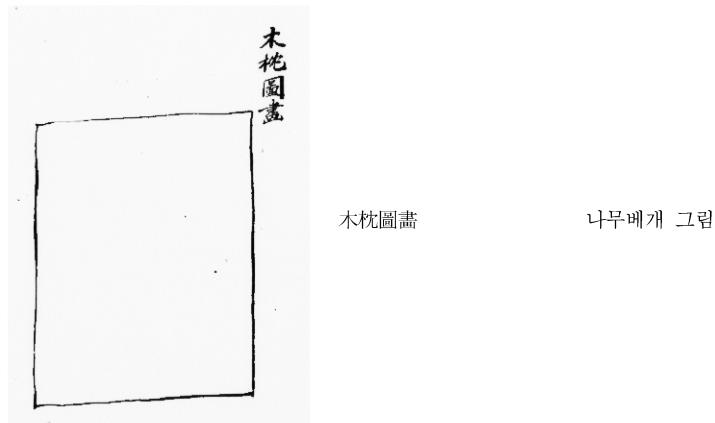
長四尺二寸七分
頭圍圓廣四寸八分
下圍圓廣二寸四分

길이 147.2cm
머리둘레너비 16.6cm
아래둘레너비 8.3cm

- (33) 『春川郡東外二作面北方面致死男人柳乙用獄事初檢文案』(奎 21455), 1905년, 강원
도 춘천군.



- (34) 『寧越郡郡內面上松里小地名學堂谷致死男李達成獄事初檢案』(奎 21457), 1905년,
강원도 영월군.



(35) 『江原道裁判所在囚許大之間供記』(奎 21486), 1907년, 강원도재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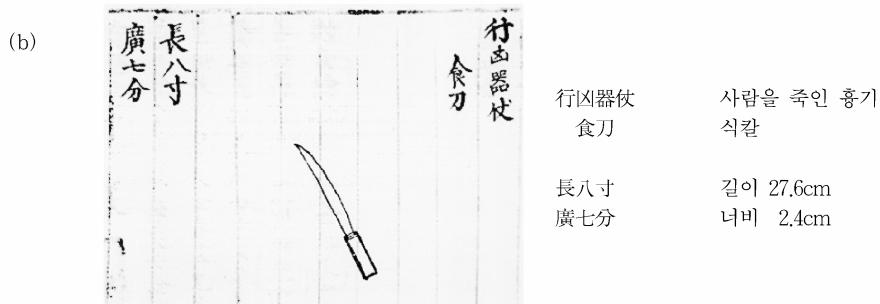
(a) 初檢

行兇器杖 廣大柵木	사람을 죽인 흉기 넓고 큰 짜리나무
長三尺四寸 大頭經一寸九分 小頭經一寸六分 卽李順化生時所杖者	길이 117.2cm 큰머리직경 6.6cm 작은머리직경 5.5cm 곧 이순화가 살아있을 때 짚던 것.
行兇器杖 廣大柵木	사람을 죽인 흉기 넓고 큰 짜리나무
長三尺四寸 大頭經一寸九分 小頭經一寸六分 卽李順化生時所杖者	길이 117.2cm 큰머리직경 6.6cm 작은머리직경 5.5cm 곧 이순화가 살아있을 때 짚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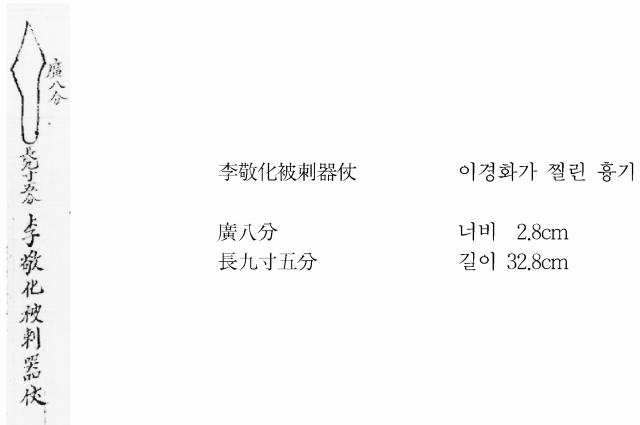
(b) 覆檢

行兇器杖 柵木	사람을 죽인 흉기 짜리나무
長三尺四寸 大頭經二寸 小頭經一寸八分	길이 117.2cm 큰머리직경 6.9cm 작은머리직경 6.2cm
行兇器杖 柵木	사람을 죽인 흉기 짜리나무
長三尺四寸 大頭經二寸 小頭經一寸八分	길이 117.2cm 큰머리직경 6.9cm 작은머리직경 6.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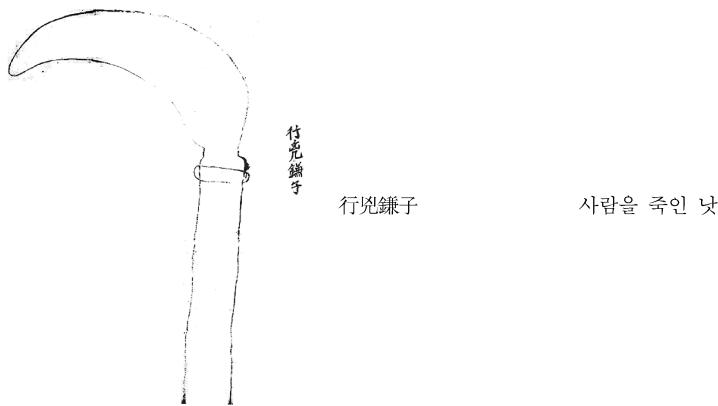
- (36) 『古阜郡雨日面漢橋里致死男人金春基屍體金興萬屍體初檢案』(奎 21488), 1905년,
전라도 고부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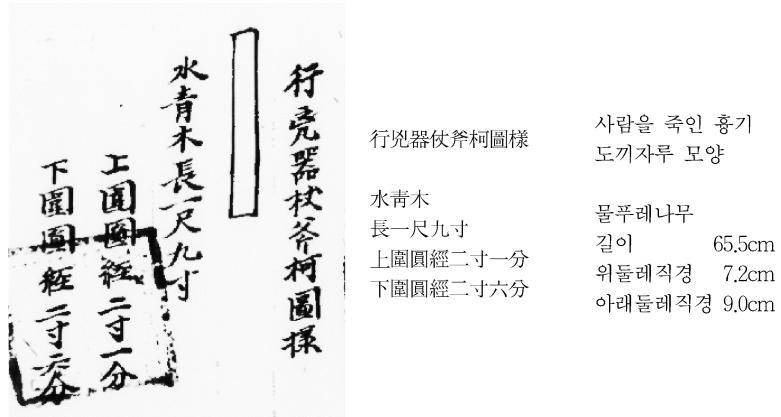
- (37) 『江陵郡內面雲東洞致死男人李云之李敬化屍身檢驗文案』(奎 21489), 1902년, 강원
도 강릉군.



(38) 『旌善郡郡內下里致死男人崔順甫初檢文案』(奎 21490), 1902년, 강원도 정선군.



(39) 『麟蹄郡郡內面長承坪致死男人金文一初檢文案』(奎 21492), 1903년, 강원도 인제군.



(40) 『伊川郡方丈面佳下里致死男人申萬才初檢案』(奎 21493), 1903년, 강원도 이천군.

(a) 申萬才

行
兎
石
子



行兎石子

사람을 죽인 돌

長一尺四寸
廣九寸
稜厚七寸八分
重二十五斤

길이 48.3cm
너비 31.0cm
모서리두께 26.9cm
무게 15kg

(b) 申順五

行
兎
石
子



行兎石子

사람을 죽인 돌

長一尺一寸
廣八寸八分
厚二寸
重七斤半

길이 37.9cm
너비 30.3cm
두께 6.9cm
무게 4.5kg

(41) 『原州郡好梅谷面二里小地名平川村致死女人劉召史屍體初檢文案』(奎 21495), 1899년, 강원도 원주군.



自刺刀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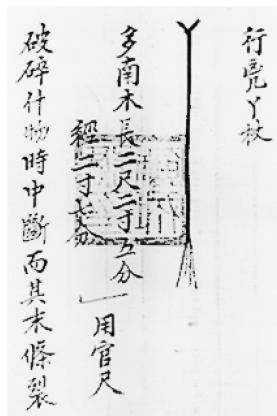
스스로 자른 칼

長八寸
上廣五分
下廣一寸三分

길이 27.6cm
너비 1.7cm (위)
4.5cm (아래)

(42) 『橫城郡井谷面蘆洞致死女人洪召史獄事文案』(奎 21496), 1900년, 강원도 횡성군.

(a) 初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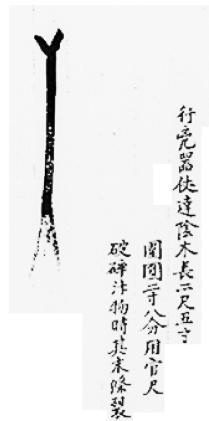
行兎丫杖

사람을 죽인 지겟작대기

多南木
長二尺二寸五分
經二寸七分
用官尺
破碎什物時
中斷而其末條裂

다릅나무
길이 77.6cm
직경 9.3cm
(관척을 씀.)
집물을 부술 때 가운데가
끊어져 가지 끝이 찢어짐.

(b) 覆檢



行兇器杖	사람을 죽인 흉기
達陰木	다辱나무
長二尺五寸	길이 86.2cm
圍圓二寸八分	둘레 9.7cm
用官尺	(관척을 씀.)
破碎汁物時	집물을 부술 때
其末條裂	가지 끝이 찢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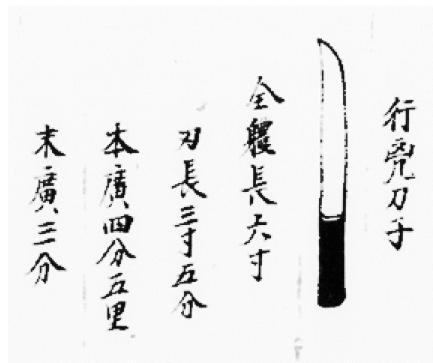
(43) 『麟蹄郡南面青邱里致死男人李化善獄事初檢文案』(奎 21497), 1902년, 강원도 인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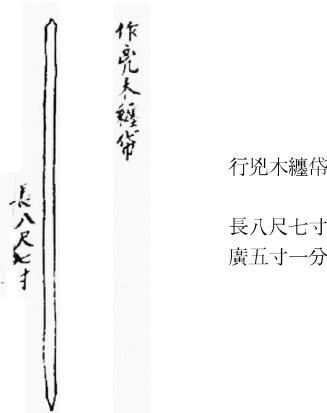
行兇器杖	사람을 죽인 흉기
長四尺	길이 137.9cm

(44) 『麟蹄郡北面元通里致死男人李周益獄事初檢文案』(奎 21498), 1902년, 강원도 인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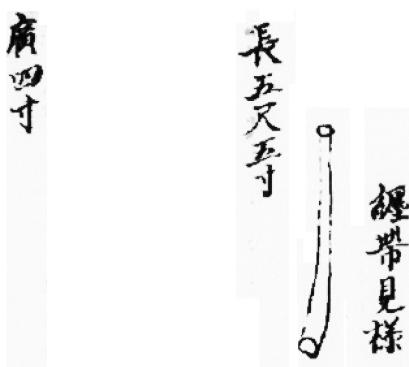
(a) 李周益



行兇刀子	사람을 죽인 칼
全體長六寸	전체길이 20.7cm
刃長三寸五分	날길이 12.1cm
本廣四分五厘	뿌리너비 1.6cm
末廣三分	끌너비 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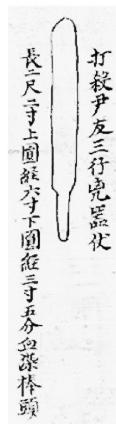
(b) 姜文淑
初檢

行兇木纏信	사람을 죽인 무명전대
長八尺七寸	길이 300.0cm
廣五寸一分	너비 17.6cm

(c) 姜文淑
覆檢

纏帶見樣	전대 본보기
長五尺五寸	길이 189.6cm
廣四寸	너비 13.8cm

(45) 『楊州郡青松面大田里被腸致死男人黃時京及坪村里被打致死男人尹友三獄事初檢文案』(奎 21508), 1898년, 경기도 양주군.



打殺尹友三行兇器仗	윤우삼을 매려죽인 흉기
長二尺二寸	길이 75.9cm
上圓經六寸	둘레직경 20.7cm (위)
下圓經三寸五分	12.1cm (아래)
血染棒頭	몽둥이 끝이 피로 물들.

(46) 『砥平郡北面分地洞被打致死男人姜君心獄事初檢文案』(奎 21534), 1899년, 경기도 지평군.



行兇器仗圖畫	사람을 죽인 흉기 그림
長二尺一寸五分	길이 74.1cm
圍圓廣七寸五分	둘레너비 25.9cm [직경 8.2cm]

(47) 『驪州郡吉川面華隱里致死男人李廷來獄事覆檢文案』(奎 21535), 1900년, 경기도 여주군.

(a)

藁索三條內一條長三尺八寸一條長六尺六寸一條長四尺寸



行兇器仗

有隅木椎

長二尺一寸

사람을 죽인 흉기

모난 나무방망이
길이 72.4cm

(b)

有隅木椎
長二尺一寸

藁索三條內
一條長二十九尺
一條長六尺六寸
一條長四尺五寸

새끼줄 세 가닥 중
한 가닥 길이 999.9cm
한 가닥 길이 227.6cm
한 가닥 길이 155.2cm

(48) 『南原郡西奉坊致死男人僧奉典初檢案』(奎 21571), 1904년, 전라도 남원군.

搗臼杵圖形
 절굿대



搗臼杵圖形
절구대

直長三尺一寸
圓圓長八寸
重七斤八兩

절굿공이 그림
절굿대

길이 106.9cm
둘레길이 27.6cm
무게 4.5kg

(49) 『鎮安郡南面德峴里被打致死男人鄭昌杵屍身案』(奎 21579), 1899년, 전라도 진안군.

(a) 初檢



大石
圓圓長一尺九寸
廣一尺三寸

大石
圓圓長一尺九寸
廣一尺三寸

큰돌
둘레길이 65.5cm
너비 44.8cm

(b) 覆檢



圓圓長二尺三寸
廣一尺七寸

石畫
圓圓長二尺三寸
廣一尺七寸

돌 그림
둘레길이 79.3cm
너비 58.6cm

(c) 初檢



小石
長四寸五分
廣二寸一分

小石
長四寸五分
廣二寸一分

작은돌
길이 15.5cm
너비 7.2cm

(d) 覆檢



石畫
長六寸五分
廣三寸二分

石畫
長六寸五分
廣三寸二分

돌 그림
길이 22.4cm
너비 11.0cm

(e) 初檢



刀子
刃長二寸六分
廣三分
柄長二寸二分
廣四分

刀子
刃長二寸六分
廣三分
柄長二寸二分
廣四分

칼
날길이 9.0cm
너비 1.0cm
자루길이 7.6cm
너비 1.4cm

(f) 覆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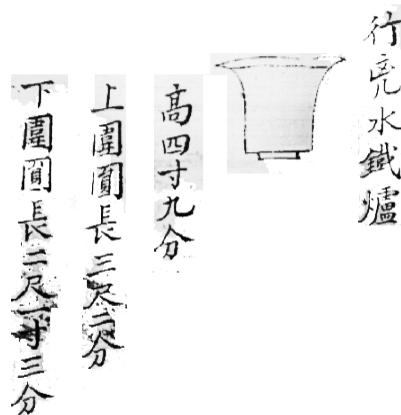
刀畫

刃長三寸二分
廣三分
柄長二寸八分
廣四分

칼 그림

날길이 11.0cm
너비 1.0cm
자루길이 9.7cm
너비 1.4cm

(50) 『忠州郡南邊面道庄洞致死男人金云西屍身初檢文案』(奎 21594), 1896년, 충청도
충주군.



行兜水鐵爐

高四寸九分
上圍圓長三尺二分
下圍圓長二尺一寸三分

사람을 죽인 무쇠화로

높이 16.9cm
둘레길이 110.3cm (위)
73.4cm (아래)
[직경 35.1cm (위)
23.4cm (아래)]

- (51) 『黃潤郡郡內面小溪里致死女人具氏及致死男人白學汝檢驗文案翻譯』(奎 21615), 1897년,
충청도 황간군.



白學汝被打器仗
松木
長三尺一寸
圓圓一寸六分
長

백학여가 맞은 흉기
소나무
길이 106.9cm
둘레 37.9cm
길이

- (52) 『全羅南道長興郡大興面扇子島致死男人李順基韓明順兩獄檢案證本成冊』(奎 21627),
1897년, 전라도 장흥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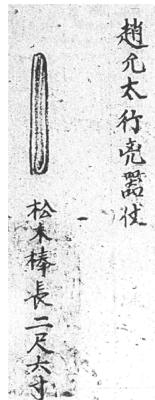


行兇器仗
枝白木

사람을 죽인 흉기
철굿공이

(53) 『光陽郡鳳岡面江邊村致死男人李學祚屍體案』(奎 21629), 1897년, 전라도 광양군.

(a)



趙允太行兇器杖	조윤태가 사람을 죽인 흉기 그림
松木棒	소나무몽둥이
長二尺六寸	길이 89.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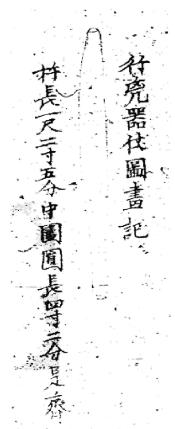
(b)



竹槍	죽창
體長三尺三寸	몸 길이 113.8cm
尖長三寸	끝 길이 10.3cm

(54) 『潭陽郡牛峙面松山里致死女人吳召史初檢文案』(奎 21630), 1898년, 전라도 담양군.

(a)



行斂器仗圖畫記

사람을 죽인 흉기 그림

杵

절굿공이

長一尺二寸五分

길이 43.1cm

中圍圓長四寸二分是齊

가운데둘레길이 14.5cm

(b)



鐔

낫

曲長一尺二寸

굽은 길이 41.4cm

面廣六分是齊

너비 2.1cm

(55) 『南平郡金馬山面本村致死男人洪道三盧俊五屍身初檢案』(奎 21631), 1897년, 전라
도 남평군.

(a) 洪道三



被觸板木圖
長四尺四寸八分
廣八寸
觸傷木缺處
深一寸五分
廣一寸四分
血赤色染在
缺處
觸傷木缺處
長四尺四寸八分
廣八寸
觸傷木有鐵環
觸傷木缺處
深一寸五分
廣一寸四分
血赤色染在
缺處

절린 판목 그림
길이 153.1cm
너비 27.6cm
가로띠나무에 쇠고리가 있음.
찔려서 다친, 나무가 이지러진 곳
깊이 5.2cm
너비 4.8cm
피가 붉은 색으로 물들어 있음.

(b) 盧俊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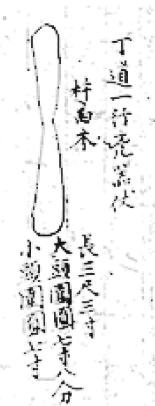
金召史行兇之棒木圖
長一尺三寸八分
廣一寸八分
厚一寸
此是小棒木而
大棒木燒不存故
不爲圖畫
길이 47.6cm
너비 6.2cm
누께 3.4cm

김조이가 사람을 죽인 몽둥이 그림
길이 47.6cm
너비 6.2cm
누께 3.4cm
이것은 작은 몽둥이이고,
큰 몽둥이는 불타서 없어졌으므로
그림을 그릴 수 없음.

(56) 『全羅北道茂長郡莊子山面小渴里致死總角男姜長京及致死男人丁道一兩屍體文案』

(奎 21636), 1898년, 전라도 무장군.

(a) 初檢



丁道一行兇器仗

柵白木

長三尺三寸

大頭圍圓七寸八分

小頭圍圓七寸

정도일이 사람을 죽인 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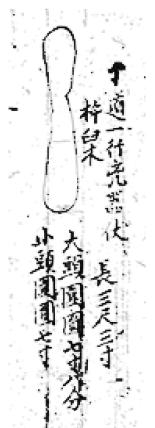
절굿공이

길이 113.8cm

큰머리둘레 26.9cm

작은머리둘레 24.1cm

(b) 覆檢



丁道一行兇器仗

柵白木

長三尺三寸

大頭圍圓七寸八分

小頭圍圓七寸

정도일이 사람을 죽인 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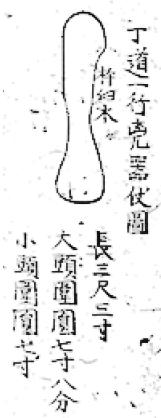
절굿공이

길이 113.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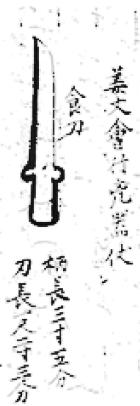
큰머리둘레 26.9cm

작은머리둘레 24.1cm

(c) 三檢

丁道一行兇器仗圖
杵臼木정도일이 사람을 죽인 흉기
절굿공이長三尺三寸
大頭圍七寸八分
小頭圍七寸길이 113.8cm
큰머리둘레 26.9cm
작은머리둘레 24.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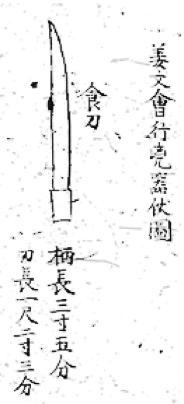
(d) 初檢

姜文會行兇器仗
食刀강문회가 사람을 죽인 흉기
식칼柄長三寸五分
刃長一尺二寸三分자루길이 12.1cm
날길이 42.4cm

(e) 覆檢

姜文會行兇器仗
食刀강문회가 사람을 죽인 흉기
식칼柄長三寸五分
刃長一尺二寸三分자루길이 12.1cm
날길이 42.4cm

(f) 三檢

姜文會行兇器仗圖
食刀柄長三寸五分
刃長一尺二寸三分강문희가 사람을 죽인 흉기
식칼자루길이 12.1cm
날길이 42.4cm

(57) 『魯城郡光石面論山里致死女人朴召史屍體文案』(奎 21641), 1899년, 충청도 노성군.

行兇松木杖圖
 사람을 죽인 소나무베개 그림高四寸
廣一寸높이 13.8cm
너비 3.4cm

- (58) 『驪州郡介軍山面香谷被刺致死男人金寅圭獄事查報文案』(奎 21642), 1904년, 경기도 여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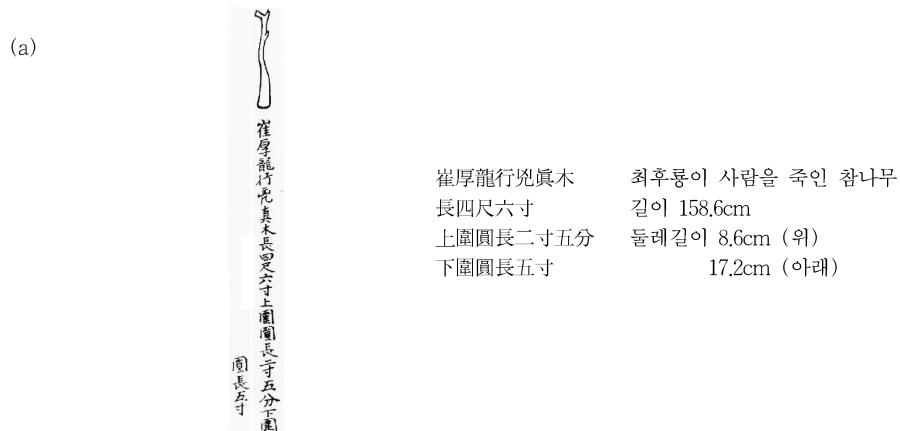
- (59) 『大邱郡西上面東山里致死男人黃達守屍身初檢文案』(奎 21651), 1898년, 경상도 대구군.



- (60) 『仁川府多所面事項洞致死男人李命集獄事初檢文案』(奎 21671), 1901년, 경기도
인천항경무서.



- (61) 『忠州郡沙伊面元忠里致死男人趙憲球與崔厚龍獄事初檢文案』(奎 21723), 1902년,
충청도 충주군.



(b)



趙仁善打殺崔厚龍石塊
圍圓長一尺三寸一分

趙仁善打殺崔厚龍石塊
圍圓長一尺三寸一分

조인선이 최후룡을 때려 죽인 돌덩이
둘레길이 45.2cm
[직경 14.4cm]

(c)



趙仁善打殺崔厚龍真木
長二尺一寸
上圍圓長二寸七分
下圍圓長三寸三分

趙仁善打殺崔厚龍真木
長二尺一寸
上圍圓長二寸七分
下圍圓長三寸三分

조인선이 최후룡을 때려죽인 참나무
길이 72.4cm
둘레길이 9.3cm (위)
11.4cm (아래)

(62) 『泗川郡松山面鰲島致死男人孫今山屍身文案』(奎 21739), 1895년, 충청도 면천군.



繫髮抹木

長二尺一寸

長一尺九寸

머리카락을 묶었던 나무말뚝

길이 72.4cm

길이 65.5cm

(63) 『開城府西部館前里致死女人金召史獄事交河郡覆檢文案』(奎 21814), 1899년, 경기도 교하군.



行兇器仗

石子

사람을 죽인 흉기

돌

以官尺

(관척으로)

長三寸

길이 10.3cm

大頭廣一寸

큰머리너비 3.4cm

小頭廣七分

작은머리너비 2.4cm

(64) 『龍潭郡一西面好美洞被打致死男人洪甲得被打後將養不效致死男人洪鍾述獄事案』

(奎 21823), 1901년, 전라도 용답군.

(a) 初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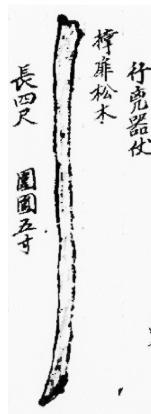
行兇器仗
撐扉松木

사람을 죽인 흉기
사립문 벼름목 소나무

長四尺
圍圓五寸

길이 137.9cm
둘레 17.24cm

(b) 覆檢



行兇器仗
撐扉松木

사람을 죽인 흉기
사립문 벼름목 소나무

長四尺
圍圓五寸

길이 137.9cm
둘레 17.24cm

- (65) 『淸州郡西江內二面新村里致死男人鄭夏鎔鄭成用 兩屍身案』(奎 21861), 1901년,
충청도 청주군.



桃木丫杖	복송나무 지겟작대기
長三尺六寸	길이 124.1cm
圍圓三寸	둘레 10.3cm

- (66) 『忠州郡北邊面方井洞致死男人朴鍾倫獄事文案』(奎 21864), 1901년, 충청도 충주군.

(a) 初檢



行兇刀子雙刃	사람을 죽인 칼 쌍날
行兇時折斷	사람을 죽일 때 부러짐.
行兇時屈曲	사람을 죽일 때 휘어짐.

(b) 覆檢



行刺刀子兩刃

本已中折

行刺時觸地屈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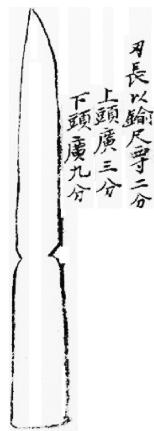
찌른 칼 두날

원래 이미 가운데가 부러짐.

자를 때 땅을 찔러 휘어짐.

(67) 『懷仁郡西面鹽峙里致死男人金凡水文案』(奎 21874), 1902년, 충청도 회인군.

(a) 初檢



刀長以鎰尺三寸二分

上頭廣三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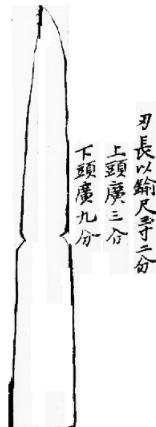
下頭廣九分

날길이 11.0cm (유척으로)

윗머리너비 1.0cm

아랫머리너비 3.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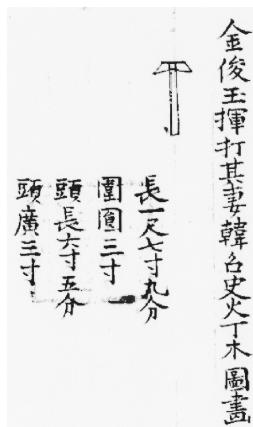
(b) 覆檢



刃長以鎰尺三寸二分
上頭廣三分
下頭廣九分
下頭廣三分合

날길이 11.0cm (유척으로)
윗머리너비 1.0cm
아랫머리너비 3.1cm

(68) 『沃川郡東面支石里致死女人韓召史獄事檢驗文案』(奎 21877), 1902년, 충청도 옥천군.



金俊玉揮打其妻韓召史
火丁木圖畫
김준우이 그의 처 한조이를
휘둘러 때린 불고무래 그림

長一尺七寸九分
圓三寸
頭長六寸五分
頭廣三寸
頭長六寸五分合

길이 61.7cm
둘레 10.3cm
머리길이 22.4cm
머리너비 10.3cm

(69) 『海美郡城内致死男人尹子英屍身初檢文案』(奎 21882), 1898년, 충청도 해미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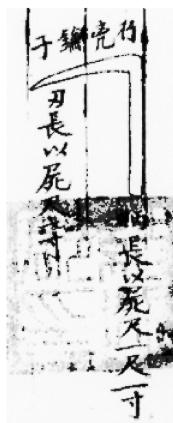
行兇刀子

사람을 죽인 칼

刃長二寸五分
廣三分

날길이 8.6cm
너비 1.0cm

(70) 『結城郡加山面中里致死男兒姜今用屍身初檢文案』(奎 21883), 1898년, 충청도 결
성군.



行兇鎌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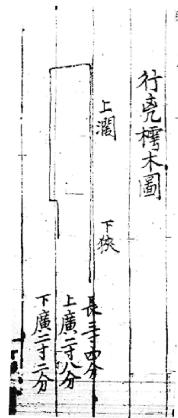
사람을 죽인 낫

刃長以屍尺七寸
柄長以屍尺一尺一寸

날길이 24.1cm (시척으로)
자루길이 37.9cm (시척으로)

(71) 『忠州郡周柳面瓦山致死男人李允汝屍身文案』(奎 21903), 1899년, 충청도 청안군.

(a) 初檢



行兇櫟木圖

사람을 죽인 가죽나무 그림

上闊

위는 넓고

下狹

아래는 좁음

長三寸四分

길이 11.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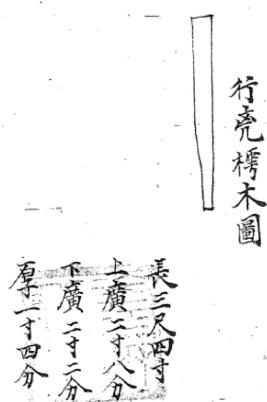
上廣二寸八分

윗너비 9.7cm

下廣二寸二分

아래너비 7.6cm

(b) 覆檢



行兇櫟木圖

사람을 죽인 가죽나무 그림

長三尺四寸

길이 117.2cm

上廣二寸八分

윗너비 9.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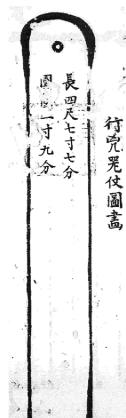
下廣二寸二分

아래너비 7.6cm

厚一寸四分

두께 4.8cm

(72) 『眞寶郡東面花梅里致死男人裴龍周獄事案』(奎 25046), 1898년, 경상도 진보군.



行兇器杖圖畫

사람을 죽인 흉기 그림

長四尺七寸七分
圍圓一寸九分

길이 164.5cm
둘레 6.6cm

(73) 『平安北道各郡檢屍文案』(奎 26232), 1898-1904년, 평안도.



長三尺一寸
圍圓二寸七分

길이 106.9cm
둘레 9.3cm

(b) 楊二

行兇銃柄及
彈丸圖畫사람을 죽인 총 자루 및
탄환 그림

銃柄

총자루

直長參尺
頭圓柒寸陸分길이 103.4cm
머리둘레 26.2cm

(c) 楊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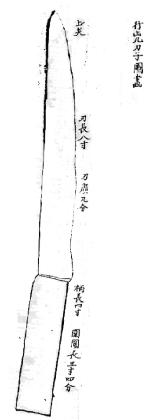


彈丸

탄환

直長捌分
圓長壹寸길이 2.8cm
둘레 길이 3.4cm
(직경 1.1cm)

(d) 崔龍九



行兇刀子圖畫

사람을 죽인 칼 그림

上尖

윗끌

刃長八寸
刃廣九分
柄長四寸
圓長三寸四分날길이 27.6cm
날너비 3.1cm
자루길이 13.8cm
둘레길이 11.7cm

(e) 鄭召史
初檢

行兇刀子圖

사람을 죽인 칼 그림

刃長二寸四分
柄長二寸五分
刃廣四分
柄廣六分
刃脊厚半分
柄脊厚三分

날길이 8.3cm
자루길이 8.6cm
날너비 1.4cm
자루너비 2.1cm
날등두께 0.2cm
자루등두께 0.7cm

(f) 鄭召史
覆檢

行兇刀子圖

사람을 죽인 칼 그림

長五寸三分
廣三分
廣五分

길이 18.3cm
너비 1.0cm (날)
너비 1.7cm (자루)

(74) 『檢屍文案』(奎 26294), 1896년, 경기도 이천군



曹秉文行兇器仗圖畫

조병문이 사람을 죽인 흉기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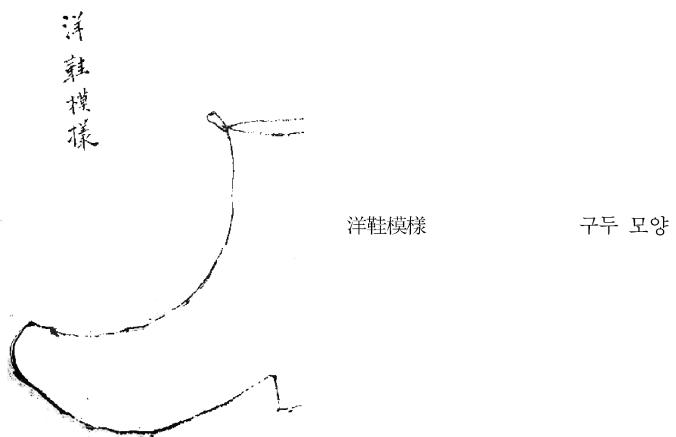
長肆尺貳寸

길이 144.8cm

圍圓長參寸
圍圓長捌寸

둘레길이 10.3cm (위)
27.6cm (아래)

(75) 『昌原郡東面檀溪里致死男人金性化獄事初檢案』(奎 26326), 1906년, 경상도 창원군.



(76) 『居昌郡川內面松亭酒店洞致死劉文五初檢文案』(奎 26330), 1902년, 경상도 거창군.

